

연구보고 2011-13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법제 연구

김 정 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법제 연구

Study on Product Safety Management
Law to Protect Children

연구자 : 김정순(선임연구위원)
Kim, Jeong Soon

2011.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최근 어린이의 건강, 생명, 신체에 유해한 불량·불법제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는 신체적 조건, 인지능력, 행동양식 등이 일반 성인과 다르므로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예측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짐.
- 일반 성인이라면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거나 표시함으로써 위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경우는 이러한 고지 또는 표시만으로 위험을 예방하는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의 특성이 고려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제품안전법제의 범위, 제품의 범위, 제품안전의 개념. 그리고 어린이의 법령상 기준 등 고찰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체계 및 현황

○ 관련법제의 체계

-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환경보건법」 등의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중심

○ 제품안전정책수립계획과 추진체계

○ 제품안전확보수단 등

- 품질관리제도, 위해정보관리제도, 안전성조사, 결함정보보고제도,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제도, 행정청의 강제리콜제도, 어린이보호포장제도,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미국과 일본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 현황

○ 미국

- 「소비자제품안전법」,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유독물질규제법」, 워싱턴 주의 어린이 안전제품법

○ 일본

-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품규제를 위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 체계의 정비

- 장기적 관점 : (가칭)「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 단기적 관점 : 안전영역별 법령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규정 신설
-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이 수립 및 평가체계의 개선
 - 제품안전정책수립체계의 개선
 - 제품안전정책의 시행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 어린이 제품안전행정종합기구의 설치 검토
- 제품안전정보의 보고, 수집 및 처리의 개선
- 시험검사기관의 확충 및 정보수집기관과의 연계

Ⅲ. 기대효과

-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부응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정책 결정에 기여
-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령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제제품안전기본법, 위해정보관리제도, 결함정보보고제도, 자발적 리콜제도, 강제 리콜제도, 어린이보호포장제도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s

- Recently consumer product safety accidents have been caused by damaged or illegal products which are harmful to children's health, lives, and bodies.
- Children's physical conditions, perception abilities, behavior patterns or the lik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adults and thus their abilities to predict and deal with safety hazards caused while using products are lower than those of adults.
- In the case of an ordinary adult, safety hazards may be prevented to a certain degree by means of notices, including precautions, however, providing only notices or lablings are not enough to prevent dangers to children.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mprove product safety law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hildren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I . Major Contents

- Consideration of the scope of product safety laws, scope of

products, concept of product safety and statutory provisions regarding children

- System and current status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laws to protect children
 - Acts relating to product safety management
 - Focused on product safety management provisions prescribed by Framework Act on Consumers,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Quali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Industrial Products Act,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Children's Amusement Facilities, Child Welfare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Environmental Health Act
 -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duct safety policies
 - Methods to ensure the safety of products or the like
 - Quality control system, management of information on safety hazards, safety checks, obligation to report information on defects of products, voluntary recall system, mandatory recall order by administrative agencies, child-resistant packaging requirements,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network, or such
- Current status of product safety law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United States

-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Children's Safe Products in Washington State

○ Japan

- Consumer Products Safety Act, Act on Regulation of Hazard Substances in Household Articles, and Food Sanitation Act

- Issues related to product safety law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m

○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garding Product Safety Management Laws to Protect Children

- In a long-term view perspectiv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concerning Product Safety Management for Protection of Children (Tentative title)
- In a short-term view perspective: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regarding product safety to protect children in the subject area of product safety

○ Improvement of children's product safety policies

- Improvement of system to formulate product safety policies
- Construction of evaluation system for implementation of product safety policies

- Review to establish an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children's product safety
- Improvement of reporting,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product safety information
- Expansion of the number of testing institutions and liaison with information gathering institutions

III. Expected Effects

- Contribution to make further policy decision by suggesting efficient methods to manage children's products so as to protect children who are in a weak and vulnerable social position
- Practical use of suggestions to reasonably improve product safety laws governing children's produc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hildren

➤ **Key Words** :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management of information on safety hazards, obligation to report information on defects of products, voluntary recall system, mandatory recall order by administrative agencies, child-resistant packaging requirements

목 차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
제 2 장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	17
제 1 절 서 론	17
1. 어린이보호관련 제품안전법제의 범위	17
2. 제품의 범위	17
3. 제품안전의 개념	18
4. 어린이의 기준	19
제 2 절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의 현황	21
1. 개 관	21
2. 소비자기본법	24
3. 제품안전기본법	36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45
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59
6. 아동복지법	63
7. 환경보건법	64
8. 화장품법	64
9. 약사법	65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66
11.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68
제 3 절 소 결	71

제 3 장	외국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	73
제 1 절	미 국	73
1.	개 관	73
2.	소비자제품안전법	73
3.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82
4.	유독물질규제법	93
5.	워싱턴 주의 어린이 안전제품법	98
제 2 절	일 본	101
1.	개 관	101
2.	소비생활용품안전법	104
3.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108
4.	식품위생법	109
5.	장난감안전기준(ST마크 인증제도)	110
제 4 장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5
1.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 체계의 정비	115
2.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평가체계의 개선	116
3.	어린이 제품안전행정종합기구의 설치 검토	119
4.	제품안전정보의 보고, 수집 및 처리의 개선	120
5.	시험검사기관의 확충 및 정보수집기관과의 연계	121
6.	행정기관의 권한행사	122
제 5 장	결 론	125
참 고 문 헌		12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는 신체적 조건, 인지능력, 행동양식 등이 일반 성인과 다르므로 동일한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특히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신체발달이 미흡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예측 및 대처능력이 일반 성인에 비해 떨어진다.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현행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하면서도 빈번한 사고사례가 보고되고 있다.¹⁾ 일반 소비자라면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거나 표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고지 또는 표시만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나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제품에 대해서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로서 어린이들은 이른바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리고 사업자도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

1) 2003년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의 자석 삼킬 사고는 116건(코로 흡입된 21건 포함 시 13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어린이가 자력이 강한 소형 자석을 두 개 이상 삼킬 경우 장을 사이에 두고 자석끼리 끌어당겨 압착함으로써 장천공(장에 구멍이 남), 장폐색, 감염, 패혈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http://consumer.gwd.go.kr/html/fsboard.asp?id=09_safe&mode=view&idx=384&page=10

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현행 제품안전관리법제는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소비자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과 품목에 따른 개별법(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개별법에서는 규제대상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제도, 위해정보관리제도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리콜제도, 사고정보보고제도 등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에 관해서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용품의 안전기준에는 어린이의 특성이 고려되는 규정들을 각 개별법에서 일부 두고 있지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품안전법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제품안전관리법제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의 안전관리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수준 향상에 부응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관리 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품안전관련법제의 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도 있지만,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을 다루는 법체계가

2) 소비자보호법 제45조. 그리고 2010년 제정된 제품안전기본법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동법 제4조제1항), 또한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제2항).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품안전 관련법 중에서 식품분야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의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중에서 용역부문도 당연히 논외로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첫째, 제품안전법제의 범위, 제품의 범위, 제품안전의 개념. 그리고 어린이의 법령상 기준에 대하여 고찰한다.

둘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현황에 대하여 고찰한다.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환경보건법」 등의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제품안전정책수립계획과 추진체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품질관리제도, 위해정보관리제도, 안전성조사, 결함정보보고제도,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제도, 행정청의 강제리콜제도, 어린이보호포장제도,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제품안전확보수단 등을 살펴본다.

셋째, 우리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개선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제품안전관리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넷째, 지금까지의 현황을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장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

제 1 절 서론

1. 어린이보호관련 제품안전법제의 범위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의 범주를 정하는 기준은 제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어린이용 제품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법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제품이 아닌 어린이용 제품에 한정된다. 둘째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제품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법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용 제품을 비롯하여 일반인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도 어린이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단지 어린이용 제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모든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보편적, 일반적 법령이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어린이용품에 관한 법제로 한정하였을 경우 어린이용이 아닌 다른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게 되므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는 제품안전과 관련된 일반법과 특별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식품관련 제품안전관리법제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품의 범위

또한 제품안전법제라고 하였을 때, 제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물품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제품이라고 하고 있다.³⁾ 그러나 제품은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관리법’이라 함)에서는 제품 대신에 공산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5호). 따라서 물품 또는 제품과 공산품은 법령상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법제를 논함에 있어서 그 범주를 공산품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제품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공산품의 사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산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만, 공산품이외의 제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식품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3. 제품안전의 개념

제품의 품질은 제품의 사용형태와 사용기간의 두가지를 고려할 때, 그 구성요소를 유용성, 신뢰성, 안전성의 3가지 요소로 구조화할 수 있다. 유용성이란 의도한 사용형태에서 만족할 만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며, 신뢰성이란 그 제품의 유용성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합리적인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이며, 제품의 안전성이란 의도한 사용형태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

제품의 안전성은 품질의 한 구성요소로서, 특히 그 제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모든 제품에

3)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물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제품을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호).

4) 宮村鐵夫, PL制度と製品安全技術, 朝倉書店, 1995, 53쪽.

대해서 절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품의 사회적 유용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가치기준이 된다. 이러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은 유용성과 신뢰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품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품안전이란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전과정에 걸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국가 또한 제품안전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단으로 품질관리제도(안전인증, 안전확인, 안전검사, 어린이보호포장), 위해정보관리제도(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결과조치), 결함정보보고제도(사고정보수집·보고제도), 리콜제도, 제조물책임제도 등을 두고 있다.

4. 어린이의 기준

소비자기본법 및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확보를 기본이념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어린이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의 기준은 연령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법령에 따라 어린이의 연령은 각기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만 5세 미만인 자(어린이보호포장)로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서는 만 10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며, 아동보호법에서는 18세로 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법에서는 어린이의 연령에 대하여 상이하게 정하고 있다.

〈법령상 어린이 연령기준〉

어린이 연령기준	근거법령명	규정내용
만18세미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 3호	1. “어린이”란 제3 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란 「초·중 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만10세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제1호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만5세미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11. “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함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어린이 연령기준	근거법령명	규정내용
	약사법 제2조제13호	13.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화장품법 제2조제4호	4.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여기서 이와 같이 연령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칭)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을 제정하는 경우 특정 연령을 정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별법상 어린이의 연령을 개별적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 법의 입법목적달성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하였을 경우 과잉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개별법 차원에서 보호대상의 어린이를 달리하는 경우는 기준연령이 상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통합 제품안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한 것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2 절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의 현황

1. 개 관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에 관한 법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법과 개별 분야 또는 특정인의 안전을 위한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법을 안전일반법이라 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법을 안전특별법이라고 하기로 한다.

(1) 제품안전일반법

제품을 비롯하여 서비스 분야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안전을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이 있다. 다만, 안전의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것은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의 안전을 규율하고 있는 제품안전기본법 역시 안전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품안전특별법

제품안전에 관한 특별법은 다시 특별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에 해당하는 법으로는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이 있다. 물론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공산품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기 때문에 식품안전법기본상 식품⁵⁾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규율영역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6호). 후자에 해당하는 법은 특별한 제품 또는 제한된 자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말하며, 이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5)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제품안전법의 분류〉

안전일반법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안전특별법	특별일반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특별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아동복지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3) 제품안전법제의 부처별 소관법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안전에 관한 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단일의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법령을 운용하고 있다. 부처별로 소관법령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부처별 소관 제품안전법〉

부처명	소관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부처명	소관법률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기본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 환경보건법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기본법 · 아동복지법 · 약사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식품법제분야를 제외하고,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에 관한 공통적인 일반법인 소비자보호법과 제품안전기본법 그리고 각 제품별 개별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1980년에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⁶⁾되었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호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이를 실현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계 법령의 제정 등의 책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제8조에서는 위해방지기준을 제9조에서는 위해방지광고기준에 관하여

6) 법률 제3257호, 1980. 1. 4 제정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서도 안전성에 관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0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로서 관련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소비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정책 수립,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전부개정⁷⁾에서는 「소비자보호법」,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소비자기본법」과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을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말한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부개정에서는 제7장으로 소비자안전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어 어린이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보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사업자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의 요청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안전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결합정보의 보고의무 및 물품 등의 자진수거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업자에 대한 물품 등의 수거·파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의 다양한 안전제도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결과 조치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는 등 소비자안전을 보다 강화하였다.

법개정과정에서 독립된 제품안전법체제와 소비자기본법 체제의 존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현재의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1) 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제4조

7)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제1호).⁸⁾ 이 권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생명, 건강의 안전,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서 재산의 안전 등을 확보할 권리는 기업의 이익 등에 우선되는 것이고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자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책무를 진다.

이 권리는 선언적인 권리로 그 자체로는 법규로서 효력이 없다. 이를 보장할 후속 입법조치가 따라야 한다.

(2) 국가의 위해 방지 책무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물품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③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법 제8조 제1항)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8)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처음으로 1962년 3월 의회에 보낸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특별교서에서 네 가지 소비자의 권리를 선언하였다. ①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be safe) ② 알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③ 선택할 권리(the right to be choose) ④ 의견을 반영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 국제협동조합동맹은 제24회 함부르크 대회(1964)에서 소비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① 적당한 기준의 식품, 의료, 주거 등이 확보될 것 ② 오염되지 않은 환경이 확보될 것 ③ 공정한 가격, 적당한 종류, 자유로운 선택, 가짜가 아닌 상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주어지도록 노력할 것 ⑤ 경제활동에 있어서 영향력을 갖는 것 및 경제활동의 조정에 민주적으로 참가할 것. 국제소비자기구(CI)는 1980년 아시아·다음의 소비자권리를 선언하였다. ① 안전할 권리 ② 알 권리 ③ 선택할 권리 ④ 의견을 반영할 권리 ⑤ 생활의 기본적 요구가 보장될 권리 ⑥ 보상받을 권리 ⑦ 교육받을 권리 ⑧ 인간으로서 위엄과 안녕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의 권리.

(3) 시험·검사시설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을 설치하여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정확한 시험·검사 및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그 본래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관련 시험 검사이다. 안전기준 또는 수준을 정하거나,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는 경우, 분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 등에서 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4)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 소비자정책의 수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을 포함하는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법 제21조 제1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법 제22조제1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2항).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중

양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도별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4항).

2)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둔다(법 제23조).

(5) 취약계층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1항). 사업자가 물품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2항).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법규로서 의미가 없는 규정이다. 실제 의미가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전조치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①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

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②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 과태료 처분,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46조).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행정권한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대 이후 소비자정책주무부서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본래적으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수립 집행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7)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소비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업자 스스로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스스로 안전한 상품만을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예기치 않게 불량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률에서도 결함정보보고제도, 리콜제도 등을 운영하여 사업자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소비자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므로 자율적 안전조치의 미실행에 대비하여 엄격한 규제와 사후 제재가 필요한 분야이다. 불명확하고 실효가 없는 규범으로 시장을 조정하려는 입법정책은 법치국가에서 가장 멀리하여야 할 일임에도 소비자 분야에서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1) 사업자의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결함정보의 보고의무란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⁹⁾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법 제47조제1항).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②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③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④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경로, ⑤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35조 제1항).

보고의무자인 사업자는, ①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한 자, ② 물품에 성명·상호 그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¹⁰⁾, ④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9)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1) 물품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① 사망,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③ 2명 이상의 식중독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과 2) 물품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이다(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10)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법 제47조 제3항).

2) 사업자의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48조). 이 경우 사업자는 ①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②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③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④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⑤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36조)

이 제도는 이른바 리콜제도이다. 문제는 사업자 스스로 이를 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비자의 요구,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행정, 형사, 민사적 방법 모두 동원하여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상 현실 개선이 어렵다. 사업자의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증대 또는 과징금 부과, 민사벌 제재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8) 정부의 안전조치

1)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

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1항). 이러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9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영 제3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①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②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③ 결함과 위해의 내용, ④ 시정권고의 내용, ⑤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⑥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영 제37조 제2항).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①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② 물품등의 명칭, ③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④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⑤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영 제37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① 사업자의 이름, ②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 ③ 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 거부사유, ④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⑤ 그 밖에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을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영 제37조 제4항).

2) 수거·파기 등의 명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①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 또는 환급, ② 물품등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③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와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영 제38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¹¹⁾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영 제

11) 시정계획서에는 ①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②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③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④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⑤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방법(㉠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등이나 물품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38조 제3항).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①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②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③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38조 제6항).

3) 행정청의 직접 수거·파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영 제38조 제7항).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영 제38조 제8항).

수거·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등을 수거·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영 제38조 제9항).

(9) 위해정보의 수집 등

1)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며(법 제51조 제1항), 소비자안전센터는 ①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②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③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④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권의, ⑤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를 한다(법 제51조 제3항).

2)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事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1항).

소장은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①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② 물품등의 안정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③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권의, ⑤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2항).

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52조 제3항).

3)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4항).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39조 제2항).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39조 제5항).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제출한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영 제40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영 제41조).

4) 소비자안전정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소비자안전정보의 발령이나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려면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위해정보의 발생빈도, 소비자의 위해정도,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하는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영 제42조 제1항).

이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 평가위원회를 둔다(영 제42조 제2항).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영 제42조 제3항).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영 제42조 제3항).

3.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조립·가공이나 수입·판매·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제2조) 2010년에 제정¹²⁾되었다.

이 법은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안전성조사,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명령, 사업자의 제품수거등의 의무,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품안전협회의 설립), 예비안전기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총 5장 27개조로 구성되고 있다.

이 법에서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며,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하고,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법 제3조)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1) 국민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무

이 법은 ① 국민의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 수립 및 시행 책무,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시 위해방지의 우선적 고려 및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배려, 그리고 제품안전기준의 제정 및 시행, ③ 사업자의 안전한 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12) 법률 제10028호 2010년 2월 4일 제정, 2011년 2월 5일 시행

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며,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법 제4조). ④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법 제5조)

(2)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 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¹³⁾으로 정한다(법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종합계획에는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② 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③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④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2조).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
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
항,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2)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¹⁴⁾으로 정한다(법 제8조).

(3)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1) 행정기관의 안전성조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① 「품질경영 및 공산
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②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파기·수
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④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14)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①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관한 사항, ② 수거·파기·수리·
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명령을 받
은 제품에 관한 사항, ③ 사업자가 수거등을 한 제품에 관한 사항, ④ 제품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다(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를 할 수 있다.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¹⁵⁾으로 정한다(법 제9조)

2) 행정기관의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권고¹⁶⁾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¹⁷⁾할 수 있다. 사업자는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¹⁸⁾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⁹⁾(법 제10조).

-
- 1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으며(영 제4조제1항), ②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③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④ 사업자가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신청을 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영 제4조 및 제5조).
- 16)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①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② 권고의 수락 여부, ③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④ 수거 등의 시기·방법 등 조치계획, ⑤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영 제6조제2항).
- 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②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③ 권고의 사유 및 내용, ④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문·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영 제7조).
- 18) 조치의 결과 등이란 ① 수거 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② 수거 등의 내용과 실적, ③ 수거 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④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영 제8조제1항).
- 19) 수거 등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

3) 행정기관의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②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²⁰⁾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²¹⁾할 수 있다. 사업자는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법 제11조).²²⁾

4) 사업자의 자진 제품 수거 등의 의무 등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

서식의 제품의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8조제2항).

20)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란 ①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사망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과 ② 화재를 일으킨 제품 결함(제품 외부로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품결함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영 제10조).

21) 이 경우의 공표에 관하여는 영 제7조를 준용하게 됨에 따라 신문·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수거 등의 명령을 공표할 수 있다(영 제9조제2항).

22)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영 제12조).

시 보고하고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며, 조치를 한 후 수거 등의 실적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 13조).²³⁾

5) 행정기관의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²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²⁵⁾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법 제15조제2항), 제품사고조사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영 제17조제3항).

23) ① 사업자는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 수거등의 계획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③ 수거등의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4조제2항·제3항·제4항).

24)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는 ① 해당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② 제조·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 ③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속한다(영 제15조).

25)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은 ①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또는 ②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이다(영 제16조제1항)

6) 예비 안전기준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법 제22조)

(4)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1)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제품 수거등의 권고,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사업자가 행한 자진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²⁶⁾하여야 한다(법 제16조).

2)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고용인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²⁷⁾를 할 수 있다(법 제17조).

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영 제18조).

27)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으로 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②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③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④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영 제20조).

3)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법 제18조).

4)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② 제품의 위해·위험 사례 조사, ③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영 제22조)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중소기업 및 관련 학계 간에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법 제19조).

5)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교육,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불법·불량제품의 조사²⁸⁾, 기업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1조).

28)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영 제23조).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5장 41개조 구성되고 있다. 이 법은 품질경영과 공산품 안전관리라는 2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갖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산품안전관리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①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③ 이 법에 위반된 공산품에 관한 처분·조치 등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를 둔다(법 제11조제1항).

(2)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2조).

2) 안전인증 등

가.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공산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공산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①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고, ②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치는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공산품 모델〉²⁹⁾

공산품명	모델 구분
1.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가. 가(假)속눈썹: 종류별, 재료별, 색상별 나. 가(假)속눈썹용 접착제: 주성분별, 색상별
2.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용도별, 구조별, 모양별
3.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내부용기재질별, 구조별, 압력조절장치기구별, 안전장치 기구별
4. 휴대용 예초기의 날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5. 가스라이터	종류(형식)별, 구조별, 재질별

2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공산품 모델(제8조제1항 관련)

공산품명	모델 구분
6. 물놀이기구	가. 공기주입물놀이기구: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나. 공기주입보우트: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다. 수영보조용품 1) 착용형: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2) 미착용형: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7. 비비탄총	가. 성인용: 규격별(사용 연령별), 모양별, 재질별 나. 어린이용: 규격별(사용 연령별), 모양별 다. 청소년용: 규격별(사용 연령별), 모양별
8. 어린이놀이기구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9.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10. 조속기	시브직경별, 정격속도별
11. 비상정지장치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12. 완충기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13.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14. 승강장문잠금장치	개폐방식별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제14조제3항).

나. 공산품안전인증 대상품목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산품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아래의 표와 같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³⁰⁾

분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1. 섬유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2.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3. 금속	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나. 휴대용 예초기의 날
4. 생활용품	가. 가스라이터 나. 물놀이기구 다. 비비탄총 라. 어린이놀이기구 마.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5. 기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만 해당된다]

다. 안전인증의 기록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에 조건³¹⁾을 붙일 수 있으며,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³²⁾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라. 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3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2조제1항 관련)

31)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에 ①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조건의 이행결과 보고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32)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 접수대장과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최종 기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11조).

있다.³³⁾ 다만,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법 제14조제6항).

정기검사절차는 정기검사 실시 통보(안전인증기관), 정기검사 신청(제조사, 외국제조사), 정기검사 실사 (안전인증기관), 합격통보(안전인증기관), 불합격 내용 통보(안전인증기관), 불합격 내용 기술표준원에 보고(안전인증기관), 재검사 신청(제조사, 외국제조사), 재검사 결과 통보(안전인증기관)의 순으로 진행된다.

마. 자체검사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³⁴⁾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³⁵⁾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7항).

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등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³⁶⁾할 수 있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

33) 안전인증기관은 ① 해당 공산품이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② 해당 공산품이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해당 공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및 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34)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기준에서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35)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① 공산품명 및 모델명, ②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③ 검사자의 성명, ④ 검사 수량, ⑤ 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36) 정기검사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받은 정기검사의 최근 1년간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정기검사면제신청이 ① 정기검사의 최근 1년간 결과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와 ② 자체검사의 최근 1년간 실적이 우수한 경우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해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현장조사에서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동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³⁷⁾할 수 있다(제14조제8항 및 제9항)

3) 안전인증의 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③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⑤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³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4)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표시"³⁹⁾를 하여야 한다.

37) 안전인증기관은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범위 등을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15조).

38) ①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제품 등의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③ 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출고물량별로 출고 전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 ④ 외국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물량별로 통관 후 20일 이내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 ⑤ 안전인증기관이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를 통하여 해당 공산품이 이미 인증받은 공산품과 동일한 모델임을 확인한 경우, ⑥ 안전인증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안전기준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경우, ⑦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같은 품목의 공산품으로서 ㉠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될 것과 ㉡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에 대하여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동 시행규칙 제16조)

다만,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 16조제1항). 국내에서 제조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출고 전에 안전인증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5) 판매·사용 등의 금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법 제17조제항),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법 제17조제2항).

(3) 공산품자율안전확인제도

1)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

가.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에 대해 해당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이라고 하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⁴⁰⁾하여야 하고, 신고

39)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별표7과 같다.

40)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의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조제9호 및 제19조제1항).

나.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자율안전확인을 해야 하는 공산품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다음과 같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⁴¹⁾

구 분	품 목
섬유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유아용 섬유제품
화학	건전지(충전지를 포함),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유아보호용
기계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재
토건	물탱크, 미끄럼방지타일
생활용품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도어록,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벽지 및 종이장판지, 쇼핑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사다리, 모터달린 보트, 물휴지(물티슈), 온열시트, 보행기,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키보드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4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2조제2항 관련)

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19조제2항).

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제3항).

마. 서류의 비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⁴²⁾하여야 한다.

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면제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⑤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⁴³⁾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면제하거

4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①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②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검사결과서, ③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필증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21조).

4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의 면제 또는 안전성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

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19조제7항).

3) 공산품 자율안전확인표시 등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법 제20조제1항),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0조제2항).

4) 판매·사용 등의 금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되며(법 제20조제1항), 또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0조제2항).

(4)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제도

1)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

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면제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와 함께 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⑤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 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0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⁴⁴⁾

분 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1. 섬유	가.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나. 양탄자
2. 화학	가. 가죽제품 나.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다. 습기제거제 라. 화장비누 마. 화장지 바. 연질염화비닐호스
3. 토건	물탱크
4. 생활용품	가. 가구 나. 가정용공구 다. 간이빨래걸이 라. 면봉 마. 보안경 바. 선글라스 사. 안경테 아. 텐트 자. 고령자용 신발 차. 고령자용 지팡이 카.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타. 고령자용 목욕의자 파. 고령자 위치추적기 하. 물안경 거. 반사안전조끼 너. 보온·보냉용기(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더. 스테인레스 수세미 러.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며.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버. 침대 매트리스 서. 우산 및 양산

4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2) 안전품질표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당해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3) 판매금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법 제22조제2항).

4) 거짓의 안전·품질표시 금지 등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으로 안전·품질표시를 해서는 안되며, 또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된다(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5) 어린이보호포장제도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에게 위해의 염려가 있는 공산품에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에는 어렵게 설계·고안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도록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보호포장이라고 한다(법 제2조제11호·제12호 및 제24조제1항).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① 공산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⁴⁵⁾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 24조)

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품목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공산품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⁴⁶⁾

분 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화 학	1. 광택제 2. 방향제 3. 부동액 4. 세정제

45)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어린이보호포장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③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어린이보호포장의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

4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분 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5. 얼룩제거제 6.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7. 접착제

2)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⁴⁷⁾(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법 제25조)

3) 판매·사용 등 금지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법 제26조).

(6)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의 판매업자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서 당해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안전기준 또는 안전·품질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이를 판매해서는 안된다(법 제27조)

47)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11과 같다(동 시행규칙 제27조).

(7) 행정기관의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 등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법 제 31조 제1항).

(8)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및 보고 요청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①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②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검사·질문에 관한 사항, ③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⁴⁸⁾ (법 제33조)

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이법은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5장 28개조로 구성되고 있다.

이 법에서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해서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48) ① 기술표준원장은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하며. ② 시·도지사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1조)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의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용품안전인증라고 한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3조제1항).

1)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같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50종)

- 전선류(1), 전기기기용스위치(2종), 캐패시터(1종), 전기설비용부품(1종), 전기용품 보호용부품(2종), 절연변압기(1종), 전기기기(36종), 전동공구(1종),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없음, 정보 사무기기(4종), 조명기기(4종)

2) 안전인증의 면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법 제3조제1항 단서).

3)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는 반드시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1항).

4) 판매·대여 등 금지

안전인증 등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법 제7조제1항).

(2)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

전기용품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이라고 한다(법 제11조제1항).

1)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자율안전확인을 해야 하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법 제11조제1항 본문).

◎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96종)

- 전선류 : 대상없음, 전기기기용스위치(1종), 캐패시터 : 대상없음,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절연변압기(2종), 전기기기(35종), 전동공구 : 대상없음,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34종), 정보 사무기기(18종)

2) 자율안전확인 신고 면제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거나 안전성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법 제11조제1항 단서).

3)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표시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반드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법 제13조제1항).

4) 판매·대여 등 금지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안된다(법 제14조제1항).

(3)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절차 비교

구 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제도
제품시험	안전성시험	○	○
	전자파적합성시험	○	○
공장확인	제조·검사설비	○	확인안함
	원자재·공정검사	○	확인안함
	제품검사	○	확인안함
인증·신고		인증서발급	신고서발급
정기사후관리(제품시험+공장확인)		○	정기심사 없음

(4)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收去)를 명할 수 있다(법 제19조제1항).

(5) 보고와 검사 등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기용품의 제조설비·검사설비, 전기용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20조제1항).

6.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용품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국가는 다음과 같이 아동(18세 미만의 자)을 위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⁹⁾

- 제품의 성분·함량·구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품사용이 적당한 연령 표시 및 연령에 따른 주의사항 명기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 제공
-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시

49)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7.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함)에 화학성분이 함유될 경우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를 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어린이용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하며,⁵⁰⁾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환경부 고시 제2009-116호, 2009. 8. 13. 발령·시행)에서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를 정하여 지우개 등의 문구용품에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¹⁾

환경부장관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해야 한다.⁵²⁾

8. 화장품법

“안전용기·포장”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하는데,⁵³⁾ 화장품의 오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아세

50)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51)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52) 환경보건법 제24조제5항.

53) 화장품법 제2조제3호.

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의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⁵⁴⁾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다.⁵⁵⁾

9. 약사법

의약품의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하며,⁵⁶⁾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⁵⁷⁾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⁵⁸⁾

-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날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함. 이하 같음)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 개별포장당 0.045밀리그램을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을 초과한 나프록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54) 화장품법 제9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55)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56) 약사법 제2조제13호.

57) 약사법 제64조제1항.

58) 약사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휴게시설, 도시공원,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경우 그 해당 놀이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와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을 말한다.⁵⁹⁾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5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2.

-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 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이 법에서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⁶⁰⁾ 이러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96호, 2007. 12. 26. 발령, 2008. 1. 27. 시행)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⁶¹⁾ 한편 국가는 아동(18세 미만의 자)이 이용하는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⁶²⁾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⁶³⁾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하며,⁶⁴⁾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⁶⁵⁾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

6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6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62)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2.

6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제12조제1항.

6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6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 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⁶⁶⁾ 또한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⁶⁷⁾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사망 등 소정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⁶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⁶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⁷⁰⁾

11.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공산품 중 어린이용 제품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해물질은 각 개별 안전기준에 따른다. 다만,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6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6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 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 나. 같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 다.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2) 용어의 정의

- 가. ‘어린이용 공산품’이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을 말한다.
- 나. ‘유해물질’이란 3항의 안전요건에 제시된 물질을 말한다.

(3) 유해물질 안전요건

어린이용 공산품에 함유되는 유해물질의 안전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유해화학물질

유해물질		허용치
납(Pb) ¹⁾		300 mg/kg 이하
카드뮴(Cd)		75 mg/kg 이하
니켈 ²⁾		용출량 0.5 µg/cm ² /week 이하
프탈레이트 가소제 ³⁾	DEHP	총 함유량 0.1% 이하
	DBP	
	BBP	
	DINP	총 함유량 0.1% 이하
	DIDP	
	DNOP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2.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적용함
- 완구, 장신구, 안경테, 선글라스, 의류 등에 사용된 금속제품

3. 합성수지 재질로 구성된 제품에 적용함. 다만, DINP, DIDP, DNOP의 경우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공산품(치발기, 노리개 젓꼭지, 딸랑이 등)에 적용함

나. 위해 자석(hazardous magnet)

위해한 자석(1)이나 자석부품(2)이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된 자석은 부록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전기 또는 전자 부품의 기능 자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위해한 자석이란 자속지수(flux index)가 50 kG²mm² 이상이고 크기가 그림 1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 제품으로 구성된 작은 자석을 말한다.
- ② 위해한 자석 부품이란 제품에 포함된 크기가 그림1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 작은 부품이고, 자속지수(flux index)가 50 kG²mm² 이상인 자석이 부착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자석부품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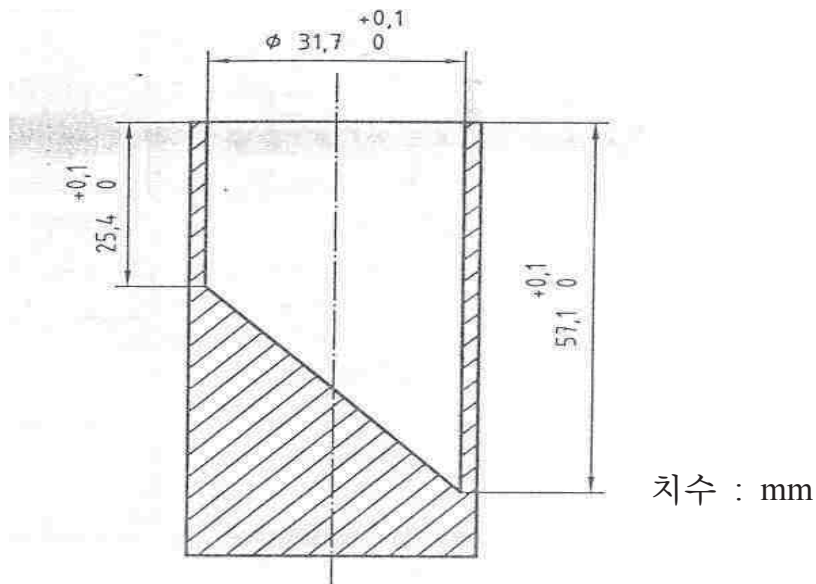


그림 1 작은 자석 측정 용기

제 3 절 소 결

앞에서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환경보건법」 등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제품안전관리 규정과, 일반소비자와 달리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규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법제는 일반적인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소비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규정으로 부족한 경우에 특히 어린이보호규정을 도입하는 입법체계를 채용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기술을 응용한 제품의 출시와 그에 따른 위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반소비자기준의 제품안전기준과 현행의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규정으로는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소비생활일반, 공산품, 전기용품,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과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관리제도, 위해정보관리제도, 안전성조사, 결함정보보고제도,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제도, 행정청의 강제리콜제도, 어린이보호포장제도,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여러 제품안전 확보 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제 3 장 외국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

제 1 절 미 국

1. 개 관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의 범주를 정하는 기준은 제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가 마련되어 왔다. 미국연방차원에서 소비자안전에 관한 법제는 소비자안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제품안전법과 개별 소비자안전법으로 구분된다. 즉 소비자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법으로 소비자제품안전법이 존재하지만, 동법은 모든 소비자제품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특수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에서 소비자안전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독물질규제법, 소비자제품안전법과 이를 개정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그리고 워싱턴 주의 어린이제품안전법 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어린이 제품안전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소비자제품안전법

(1) 개 요

1972년에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이하 CPSA)은 연방 차원에서 소비자 안전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동법이 모든 소비자 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동법의 목적은 첫째, 소비자 제품에 의한 사상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둘째,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를 지원하며, 셋째, 소비자 제품의 안전기준을 통일하여 주와 지방수준의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넷째, 소비자 제품에 의한 사상, 질병 등의 원인 규명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다.⁷¹⁾

동법은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를 두고 있으며⁷²⁾, 동 위원회는 소비자제품 안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2)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소비자 제품’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규율대상으로 정하는 제품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소비자 제품(Consumer Product)’이란 소비자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가사, 주거, 교육, 여가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소비자의 사적

71) ジェトロ・ニューヨーク・センター, 米国の消費者保護法について, 平成22年度 海外輸入制度調査, 2010. 12. 3쪽.

72)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연방 식품의약품국(FDA)이 유해물질라벨법(1960년 시행)이나 어린이 보호법령(1966년 시행)등을 소관해 왔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제품안전법(The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CPSA),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CPSIA), 연방유해물질법(The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 FHSA), 독물 예방 포장법(The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 PPPA), 가연성 직물법(The Flammable Fabrics Act : FFA), 냉장고 안전법(The Refrigerator Safety Act : RSA) 어린이 가솔린 화재 예방법(Children's Gasoline Burn Prevention Act : CGCPA) 등의 법령(Statues)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약 1만 5000 종류의 소비자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감독하고 안전기준이나 규제,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사용, 소비 등을 위하여 생산·공급된 제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⁷³⁾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해당하는 담배 및 담배 제품, 연방 교통 및 자동차안전법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연방살충제, 살균제 및 살충제, 관세법 제41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들, 연방항공법상 항공기 및 부속품,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가. 구 성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상원의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이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제품의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험이 요구되며,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보장된다.⁷⁴⁾ 위원장 역시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 권 한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에 의한 사망, 상해 및 위해의 원인,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정보통합관리소(Injury Information Clearinghouse)를 운영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비자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 위해, 질병, 기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며, 제품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을 향상시키는 공·사 기관, 제조업자들에게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칙 제정권에 따라 안전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을 제정하

73) 소비자제품안전법 제3조(a)(5) [15 U.S.C. § 2052]

74) 고희석,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안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 8., 159쪽.

여 보급할 수 있다. 기준은 소비자제품과 관련한 예상하지 못한 위해의 가능성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사용조건으로 표시된 요건, 소비자제품에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 또는 지시로 표시되거나 경고 또는 지시의 형태에 관한 요건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⁷⁵⁾ 이러한 기준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위원회는 동법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조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그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할 때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정보 공개 전에 미리 제조업자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조업자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위원회가 제조업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제조업자에게 공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제조업자 등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원고의 주소지, 주된 영업사무소 또는 공개대상 정보문서가 존재하는 연방지방법원 또는 콜럼비아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일반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제품 등의 안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위해 제품 금지

거래되고 있거나 거래 예정인 소비자제품에서 예상치 못한 위해의 가능성이 발견되거나 동법에 따라 마련된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이 당해 제품과 관련된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당해 제품을 거래가 금지되는 위해제품으로 인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⁷⁶⁾

75) 고희석, 앞의 논문, 161쪽.

76) 동법 제8조[15 U.S.C. § 2057].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어떤 소비자 제품이 상업에 유통되고 있거나 또는 유통될 예정이고 그러한 소비자 제품이 불합리한 상해

4)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제품에 대한 압류조치

위원회는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압류를 위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제품이란 급박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망, 중대한 질병 또는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제품을 말한다. 관할 법원은 당해 제품이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제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위해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시적 또는 영구적 구제방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제방안에는 피고가 알고 있는 제품 구매자에 대한 고지, 일반 대중에 대한 공지, 당해 제품에 대한 리콜, 보수, 교환 또는 환급에 관한 강제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⁷⁷⁾

5) 상당한 제품의 위해에 대한 고지 및 시정

제조업자, 모든 공급자와 판매자들은 당해 제품이 i) 소비자제품안전규칙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사업자의 자율규제기준에 합치하지 않

위험을 제기하고, 또한 본 법률에 따라 실행 가능한 어떤 소비자 제품 안전기준도 그러한 제품과 관련된 불합리한 상해 위험으로부터 일반인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는 언제든지 제9조 [15 U.S.C. § 2058]에 의거하여 그러한 제품을 금지된 유해제품으로 선언하는 규칙을 공표할 수 있다.

77) 동법 제12조. [15 U.S.C. § 2061]. 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위험한 소비자 제품의 압류를 위해 위험 제품을 상대로 하거나 제품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소매상인 사람을 상대로, 또는 양자를 상대로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위험 제품에 적용 가능한 소비자 제품 안전규칙의 존재 또는 본 법률의 다른 어떤 조항에 따른 행정 또는 사법 절차의 계류에도 불구하고 제기할 수 있다. 본 법률에서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 제품”이란 긴급하고 불합리한 사망, 중병 또는 부상 위험을 보이는 소비자 제품을 의미한다. ② 소송을 접수한 지방법원은 소송 제품을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 제품으로 선언하고, (이러한 선언에 부수하여 또는 신고 대신에) 위험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또는 영구 구제를 부여할 권한을 갖는다. 구제방법은 피고가 알고 있는 제품의 구매자에의 위험 통지, 일반 공고, 제품의 회수, 수리 또는 교체,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강제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소송의 접수와 동시에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는 소송 제기와 관련된 소비자 제품에 적용 가능한 소비자 제품 안전규칙을 공표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소비자 제품 또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함에 있어, 소송에서 내릴 수 있는 구제명령의 준수에 따른 비용과 구제로 인한 공익을 비교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거나, ii) 위원회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상 규칙과 기준 등에 일치하지 않거나, iii) 중대한 제품의 위해를 야기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iv)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위해 또는 사망을 야기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⁷⁸⁾

위원회가 상업적으로 유통된 제품이 상당한 위해를 야기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회가 제조업체에 통고한 후 제품이 긴급히 위험한 소비자 제품이라고 결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위원회는 위해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나 판매업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⁷⁹⁾

i)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킨다.

ii) 제품을 수송, 보관, 유통하는 자 또는 그 상대방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알린다.

iii) 해당 주 및 지방 공중보건 공무원에게 알린다.

iv) 결함 또는 준수 불이행에 대해 공고하되, 여기에는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명확하고 눈에 띄는 안내문 게시, 제조업체, 판매업체, 유통업체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품 판매를 홍보한 모든 제3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공고 제공, 그리고 회수 상품의 대상자

78) 동법 제15조(b) [15 U.S.C. § 2064].

(b) 상업적으로 유통된 소비자 제품, 또는 위원회 소관 기타 모든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 기타 제품(표제 49, USC의 섹션 30102(a)(7)에 정의된 자동차 장비 제외)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판매업자가 그 제품이 ①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소비자 제품 안전규칙 또는 위원회가 신뢰하는 자발적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상당한 제품위험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포함하거나, 불합리한 증상 또는 사망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결함, 준수 불이행 또는 위험이 위원회에게 적절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게 그러한 준수 불이행, 그러한 결함 또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제공되는 보고는 외관상 사취 또는 오도 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유해물질법의 섹션 5 (15 U.S.C. 1264)에 따른 보고자의 형사상 소추를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79) 동법 제15조(c) [15 U.S.C. § 2064].

가 되는 상당수의 소비자에게 통지로는 달리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와 라디오 및 TV를 통한 안내를 포함한다.

v) 위해 제품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소매상인 각자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vi)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품이 배달 또는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의 모든 명령은 동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통지의 형식과 내용을 지정해야 한다.

만약 지방법원이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인 제품이 긴급히 위험한 소비자 제품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위원회는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발령된 모든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6) 금지행위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동법상 소비자제품안전규칙 등에 위반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거나, 판매를 위한 제조, 상업적 공급 또는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위원회가 일반 대중에게 공지하거나 판매업자 등이 이를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자의 임의적 리콜대상 제품, 동법 제12조 또는 제15조상 위원회의 명령의 대상이 된 제품 또는 연방위해물질법상 금지된 위해물질에 대한 판매 행위 등은 위법행위로 인정된다.⁸⁰⁾

80) 동법 제19조. [15 U.S.C. § 2068]. (a) 누구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1)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기타 법률의 규율 대상이면서 본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소비자 제품 안전규칙 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기타 모든 법률에 따른 그와 유사한 규칙, 규정, 기준 또는 금지를 따르지 않는 기타 제품 또는 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제공하거나, 판매용으로 제조하거나, 상업에 유통시키거나, 또는 미합중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2) 모든 소비자 제품, 또는 위원회와의 협의로 제조업체가 취한 자발적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단, 위원회가 그러한 조치를 일반인에게 공고했거나 또는 판매인, 유통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그러한 자발적 시정조치를 알았거나 또는 알았었어야 했을 것.) 본 법률의 섹션 12 또는 15에

이러한 위법행위를 고의적으로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행위당 1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며, 배상 총액은 15,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⁸¹⁾ 또한 제19조에서

따라 발령된 명령의 적용 대상이거나, 또는 연방유해물질법의 섹션 2(q)(1) (15 U.S.C. 1261(q)(1)) 취지에 속하는 금지된 위험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제공하거나, 판매용으로 제조하거나, 상업적으로 유통시키거나, 또는 미합중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3) 본 법률 또는 그에 따른 규칙에 따라 요구될 때, 기록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복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기록을 수립 또는 유지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보고 또는 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출입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 (4) 섹션 15(b) [15 U.S.C. § 2064(b)]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섹션 15 (c) 또는 (d) [15 U.S.C. § 2064(c) 또는 (d)]에 따라 발령된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통고, 수리, 교체 및 환불, 그리고 금지된 행위와 관련), (6)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인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인증서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앞에도 불구하고 허위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섹션 14의 요구사항 (추적 라벨에 대한 요구사항 포함) 또는 동 섹션의 규칙 또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 (7) 섹션 9(g)(2) [15 U.S.C. § 2058 (g)(2)]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사재기 관련), (8) 섹션 27(e) [15 U.S.C. § 2076(e)]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성능 및 기술 데이터의 제공 관련), (9) 섹션 35 [15 U.S.C. § 2082]에 따른 규칙 또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셀룰로오스 단일재의 라벨 및 시험과 관련), (10) 섹션 18(b) [15 U.S.C. § 2067(b)]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11) 섹션 37 [15 U.S.C. § 2084]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12) 인가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소유하는 등록된 안전성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그러한 마크가 인증마크의 소유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됨을 알거나 또는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비자 제품을 판매, 판매 제안, 상업에 유통 또는 미합중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13) 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섹션 12 또는 15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 제품의 범위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또는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기타 모든 법률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14)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기타 모든 법률에 따른 제품의 준수에 대한 시험과 관련하여 제3자 적합성평가기관 (섹션 14(f)(2)에 정의된 바에 따름) 또는 시험결과의 보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그것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15) 본 법률의 섹션 12 또는 15에 따라 발령된 명령이 적용되거나 또는 연방유해물질법의 섹션 2(q)(1) (15 U.S.C. 1261(q)(1))의 취지에서 금지된 위험물질이거나, 위원회와의 협의로 위원회가 일반인에게 공고한 제조업체에 의한 자발적 시정조치의 대상인 제품(섹션 17(e)에 따라 재무장관이 수출을 허용한 소비자 제품 또는 물질 제외)을 미합중국에서 수출하는 행위, (16) 섹션 18(c)에 따라 발령된 위원회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81) 동법 제20조(a) [15 U.S.C. § 2069] {벌금이 증가했음; 69 FR 68884 참조}.
(a) (1) 본 법률의 제19조[15 U.S.C. § 2068]를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은 그러한 각각의 위반마다 \$100,000을 넘지 않는 민사벌금의 대상이 된다. 단락 (2)에 따

금지한 행위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연방법전 Title 18, 제3571조에서 정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병과된다.⁸²⁾

7) 손해배상책임

피고인의 동법상 소비자제품안전기준 또는 위원회 명령에 대한 고의적, 의도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⁸³⁾ 연방지방법원은 소송비용, 합리적인 변호사비용 및 전문가증인

라, 섹션 19(a) (1), (2), (4), (5), (6), (7), (8), (9), (10) 또는 (11) [15 U.S.C. § 2068(a)(1)-(11)]의 위반은 일련의 관련 위반에서 최대 민사벌금이 \$15,000,000을 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관련 소비자 제품과 관련하여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섹션 19(a)(3)의 위반은 그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를 허용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마다 별개의 위반을 구성하며, 만약 그러한 위반이 계속적인 위반이면, 최대 민사벌금이 일련의 관련된 위반에서 \$15,000,000을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위반의 각 날짜마다 별개의 위반을 구성한다.

82) 동법 제21조 [15 U.S.C. § 2070]. (a) 본 법률의 섹션 19에 대한 위반은 (1) 동 섹션을 알고 고의일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2) 표제 18, USC의 섹션 3571에 따라 결정된 처벌을 받거나, 또는 (3) 둘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 전부 또는 일부로든 섹션 19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관행을 알고서 고의로 승인하거나, 명령하거나 또는 이행하는 법인의 개별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은 당해 법인이 하위섹션 (a)에 따른 벌금과 상관없이 이 섹션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된다. (c) 하위섹션 (a)에 의해 규정된 벌칙 외에,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소관하는 기타 모든 법률의 형사상 위반에 대한 벌칙은 그러한 위반과 관련된 자산의 몰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하위섹션에서, “형사상 위반”은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소관하는 기타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서, 위반자가 벌금, 자유형 또는 두 가지 형벌에 모두 처해지는 위반을 의미한다.

83) 동법 제23조 [15 U.S.C. § 2072]. (a) 소비자 제품 안전규칙 또는 위원회에 의해 발령된 기타 모든 규칙 또는 명령에 대한 악의(고의 포함) 위반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이 규칙이나 명령을 악의 (고의 포함)로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피고가 거주하거나, 발견되거나 또는 대리인을 두고 있는 재판구의 어떠한 미합중국 지방법원에서든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 법원이 정의를 위해 인정할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섹션 11(f)) [15 U.S.C. § 2060(f)]에 따라 결정됨) 및 합리적인 전문가 증언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그 소송이 미합중국, 그 대리인, 또는 직무상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상대로 제기되지 않는 한, 소송물 가액 또는 그 합계가 이자와 비용을 제하고 \$10,000을 넘어야 한다. (b) 미합중국의 성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때를 제외하고, 피고에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3.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1) 제정 배경

전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제품안전법은 소비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수한 제품이나 특수한 집단에 대한 보호에는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제품의 위해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동법이 제정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07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납성분이 검출됨으로써 수입용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였다.⁸⁴⁾ 이러한 배경에서 2008년 의회는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이하 ‘CPSIA’)을 제정하여 소비자제품안전법을 일부 개정하였다.⁸⁵⁾ 동법의

게 자격을 부여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쇄 또는 반대 청구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자와 비용을 제하고 계산했을 때, 원고가 \$10,000 미만의 가액 또는 그 합계를 회복할 권리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받은 모든 소송에서, 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비용을 부인할 수 있고, 또한 비용을 원고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c) 이 섹션에 규정된 구제는 관습법에 의해 제공되거나 또는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른 다른 구제와는 별개이며 그것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84)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완구회사인 Mattel사는 중국에서 생산된 자사의 제품에 많은 양의 납이 함유된 것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Recall을 시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무역문제로까지 대두되어 양국관계를 경직시키는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런 대량적인 Recall문제를 해결하고 자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에 관련된 새로운 법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이다.

85) CPSIA에 의해서 수정된 CSPA의 주요 조항은, § 2051-§ 2052 법령 목적, 정의(소비자제품, 어린이용 제품), § 2053-2055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설립, 정보개시 규정, § 2055a 삽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56 안전기준 책정 순서와 신규 규정, § 2056a 삽입(육아제품 안전기준 조항), § 2056b 삽입(완구 안전기준 의무화조항), § 2057-2062 유해제품 금지, 안전규칙 책정 순서, 위원회에 의한 소송

목적은 소비자제품의 안전기준과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요건(모든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업체는 트래킹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것)을 새롭게 설정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동법이 소비자제품안전법에 비해 규제가 강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

동법에서 제1장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01조 : 납함유 규제(Children's products containing lead; lead paint rule)
- 제102조 :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사, 인정(Mandatory third party testing for certain children's products).
- 제103조 : 어린이용 제품을 위한 추적 라벨(Tracking labels for children's products).
- 제104조 : 유아전용 제품의 안전기준과 소비자 등록(Standards and consumer registration of durable nursery products)

조건, § 2057a 삽입(완구와 육아 제품의 프탈산 규제 조항), § 2063 어린이용 제품의 제3자 기관 인증과 라벨 의무화, § 2064-2065 수입제품 입항 거부, 수출대상 외제품 없음, § 2068-2073 위법행위, 민사 제재 규정, 범죄 형벌, 재판권, 소송 순서(2069 수정 : 제재금의 상한 인상), § 2074-2075 주와 지방 차원의 규칙과 연방법의 구별과 권한 없음, § 2076-2080 위원회의 기능 강화, 권한, 변경 사항, 2076b 삽입(내부 감사와 보고서 의무 조항), § 2081 위원회의 예산 증가, 예산액 수정, § 2082-2084 셀룰로오스 단열재 잠정 안전기준, 연방 규칙의 의회 거부권, 소송 정보의 의회보고 없음, § 2085 전기 자전거 정의, § 2086-2087 기업이 스폰서가 된 여행 참가 금지, 기업 고발자 보호 전체적 수정, § 2088 금지나 리콜 제품 관련 비용, § 2089 전지형 대응차 안전기준 책정 등 이다.

- 제105조 : 완구와 게임의 광고 표시 필요 조건(Labeling requirement for advertising toys and games)
- 제106조 : 완구의 안전기준 의무(Mandatory toy safety standards)
- 제107조 : 소비자제품에 관련된 어린이의 사상 예방에 관한 연구 (Study of preventable injuries and deaths in minority children related to consumer products)
- 제108조 : 특정 프탈산 규제(Prohibition on sale of certain products containing specified phthalates)

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생산자 정보 부착 의무화

동법에서 ‘어린이’는 12세 이하를 의미하고, 따라서 어린이용 제품이란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을 의미한다.⁸⁶⁾

위원회는 어린이용 제품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제품 사용설명서에 12세 이하의 어린이용이라고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둘째,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포장, 전시, 홍보, 광고가 되고 있는지,

셋째, 일반적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12세 이상의 어린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넷째, 연령 결정 가이드라인(Age Determination Guidelines)과 그 개정판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용 제품을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어린이용 제품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인 완구나, 봉제인형, 어린이용 악세사리, 유아용품, 운동도구, 게임, 유아 교재, 어린이용 침대 등이다. 위원회는 동법의 대상이 되는

86) 소비자제품안전법 제3조(a)(2) [15 U.S.C. § 2052]

제품의 정의에 관해 질문을 받은 제품 등에 대한 최종 해석을 발표한 바 있다.⁸⁷⁾ 이에 따르면, 인기 캐릭터의 형태를 한 조명 기구, 어린이용 DVD, 어린이용 장식이 달린 플레이어 등도 대상이 되며, 제품의 포장재에 관해서는 제품을 꺼내 버리는 포장은 원칙적으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상자나 봉투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예컨대, 집짓기 놀이 수납상자)은 동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본다.

나. 납함유 도료 규제, 납함유량 규제

동법 제101조는 어린이용 제품의 납함유량 규제에 관해 다음의 3단계로 정하고 있다.⁸⁸⁾ 각 단계에 있어서 대상 제품이나 제외 제품의 상세한 해석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수시로 규칙, 방침이나 견해 등을 발표하고 있다.

① 제1단계

도료와 표면 코팅에 대해서는, 이 단계로부터 2008년 12월 21일 이후에 제조된 상품을 대상으로 제삼자 기관에 의한 검사와 인정(납함유량 600 ppm 이하)이 필요하고, 도료와 코팅 이외의 제품 본체 부분에 대해서는, 제삼자 기관에 의한 검사와 인정은 필요 없지만, 2008년 11월 12일 이후에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업자)에 의한 안전 확인서(GCC: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⁸⁹⁾가 필요하다.

87)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http://www.cpsc.gov/about/cpsia/childproducts.html>
관보 16 CFR Part 1200 <http://www.cpsc.gov/businfo/frnotices/fr11/childprod.pdf> 참조.
ジェトロ・ニューヨーク・センター, 子供向け製品の輸入規制(米国), 平成22年度 海外輸入制度調査, 2010. 12, 2쪽.

88) ジェトロ・ニューヨーク・センター, 子供向け製品の輸入規制(米国), 平成22年度 海外輸入制度調査, 2010. 12, 2쪽.

89) GCC란,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자주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해당하는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기 신청서를 말한다. CPSIA 시행에 의해, 동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제 대상 제품이나,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에 모두 요구된다.
<http://www.cpsc.gov/about/cpsia/conformity.pdf>

어린이용의 금속성 액세서리는, 2009년 3월 23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을 대상으로 제삼자 기관에 의한 검사와 인정(납함유량 600 ppm 이하)이 필요했다.

② 제2단계

도료와 표면 코팅에 대해서는,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을 대상으로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사와 인정(납함유량 90 ppm 이하)이 필요하고, 도료와 표면 코팅 이외(기관 부분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사와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제안했지만, 2011년 2월 10일까지 최종 결정이 연기된 바 있다. 단, 2009년 8월 14일부터 납함유량을 300 ppm 이하로 하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므로, 기준을 초과하는 상품은 위법이 된다.

어린이용의 금속성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을 대상으로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사와 인정(납함유량 300 ppm 이하)이 필요하다.

③ 제3단계

동법 제 101조는 「도료 및 표면 코팅 이외(기관 부분 등)」에 해당하는 어린이용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납함유량을 100 ppm 이하로 하는 규제를 2011년 8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는 2010년 7월 21 일자로 동규제에 관한 국민의 의견과 정보를 모집하는 고지를 실시해, 위원회가 수집된 의견과 정보를 검토한 후 2011년 8월 14일까지 최종 규칙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다. 제3자 검사기관에 의한 어린이용 제품 검사의 의무 부여

CPSIA 제 102조에는, 금지 물질이나 규제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 제품에 제3자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와 인정을 의무화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는 대상 제품의 안전 기준이나 검사 순서의 검토 또는 제3자 기관의 인정 작업을 진행시켜 구체적인 행정 규정을 수시로 고지하게 되었다. 동 조항은 위원회에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사와 인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제품 분야를 마련해 인정 기준을 책정·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완구의 안전기준(ASTM F963) 의무부여 대상

CPSIA 제 106조⁹⁰⁾는 완구의 안전에 관한 표준 소비자안전기준 (ASTM F963: 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for Toy Safety)을 2009년 2월 14일까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기준으로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위원회에 의한 기준 채택 후에도 F963의 저작권은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에 귀속해, 동 기준은 ASTM로부터 판매된다.

또한 동조는, 2009년 8월까지 동 안전기준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동위원회에 요청했다. 완구 전제품에 동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 자동차, 연, 아이의 놀이 목적이 아닌 취미 공예품, 플라모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는 ASTM F963-08 최종판을 발표해, 2009년 2월 10일 이후 ASTM F963를 연방 규칙으로서 준수하는 것과 동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제품에 대해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사·인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지만, 2009년 12월 28일자로 동위원회는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사·인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을 무기한 연기하

90) 제106조는 의무적인 장난감 안전성 기준에 관한 것이다. 즉 (a) 일반사항. - 본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180일째부터, ASTM 국제규격 F963.07 장난감 안전을 위한 소비자안전규격 (ASTM F963)의 조항들은 본 법률의 제정일에 존재하는 바에 따라 (섹션 4.2와 부록 4 또는 위원회 또는 법령에 의해 공표된 기존의 의무적 기준이나 금지를 다시 규정하거나 통합하는 조항은 모두 제외), 소비자제품안전법 (15 U.S.C. 2058)의 섹션 9에 따라 위원회가 공포한 소비자제품안전성 기준으로 간주된다.

는 것을 발표하였다. 단, 상술한 대로 2009년 2월 10일 이후는 ASTM F963의 준수가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상품은 위법이 된다.

ASMT F963에서는, 동 위원회 소관의 규제와는 다른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ASMT에서는 “14세 미만의 아이에게 강력한 자석을 판매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대상 연령이 12세 이하가 아니고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13세 이상 전용 상품이라고 표시된 자석 퍼즐이 자주적 리콜을 피할 수 없게 된 예도 있다.

마. 특정 프탈산 에스테르류 함유량 규제 대상이 되는 완구와 육아제품

CPSIA 제 108조는, 2009년 2월부터 프탈산 에스테르류 중 프탈·디에틸 헥실(DEHP), 프탈산 디부틸(DBP), 프탈산 부틸 벤질(BBP)의 3종류의 함유량이 0.1%를 넘는 완구 및 육아 제품의 판매를 항구적으로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아이가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인 육아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도 프탈·디이소노닐(DINP), 후탈·지이소데실(DIDP), 프탈산 디옥틸(DnOP)의 함유량이 0.1%를 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 조항에서는, 어린이용 완구와 육아 용품에 포함되는 모든 프탈산 에스테르류와 그 대체물질의 아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검증하기 위해 독립자문패널(만성유해물질자문패널, CHAP : Chronic Hazard Advisory Panel)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09년 2월 10일부터 상기 3종류(DEHP, DBP, BBP)의 특정 프탈산 함유량이 0.1%를 넘는 완구와 육아 제품의 판매를 항구적으로 금지하고, 동시에 DINP, DIDP와 DnOP 함유량이 0.1%를 넘는 것을 「아이가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라고 하여 해당 육아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바. 어린이용 제품의 표시 규정

CPSIA 제 103조는, 12세 이하의 어린이용 소비자 제품에는 추적 라벨(tracking label), 또는 명확하게 그것과 식별할 수 있는 항구적 마크(distinguishing permanent mark)를 부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라벨이나 마크에는, i) 제조업자 또는 프라이빗 브랜드(private brand)의 명칭, ii) 생산지, iii) 제조일, iv) 제조 프로세스 관리 정보(로트, 배치 제조 번호 등)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어린이용 소비자 제품에는 완구뿐만 아니라, 의류나 구두도 포함되어 작은 상품이나 동부분품 등은 라벨·마크의 인쇄에 무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정도로(to the extent practicable) 라벨이나 마크를 넣는다」라고 하여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에서는 2008년 10월 13일 이후, 안전기준을 법적으로 충족하지 않은 제품의 패키지나 광고·라벨에는 안전기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는,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된 12세 이하의 어린이용 소비자 제품에는 추적 라벨(항구적 마크)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제품이 아닌 포장 패키지에만 트래킹 라벨 부착이 허용된다.

- 개별적으로 표시하기에는 제품이 너무 작은 경우
- 물리적인 라벨링 또는 표시가 제품에 위해한 경우
- 제품의 표면이 영구적인 마크를 하기 불가능한 경우(예: 머리 장식, 주얼리 등)
- 물리적인 표시가 제품의 미적 요소를 해치는 경우
- 제품이 작은 구성성분으로 이뤄진 경우

또한, 제품이 신발이나 쌓기용 블록과 같이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에만 표시하면 되며, 보드게임이나 크래프트 세트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구성됐을 경우 전체 파트 한 곳에만 표시하면 된다.

2) 위원회의 수입품 검사와 금지 권한

1997-2008년 사이에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수입 액수가 4배로 증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완구나 어린이용 악세사리 등이 대거 수입됨으로써 200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에 수입 감시부(Import Surveillance Division)가 설치되어 주요 항만 거점에 상근 직원이 배치되었다.⁹¹⁾ 이들은 관세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제휴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완구류를 검사하고, 미국내 수입품 도착전 화물 리스트에 접근해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국제무역 데이터 시스템⁹²⁾이나 그 이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미국 영역에의 세관을 지나는 수입제품의 화물 정보를 평가, 심사하고, 정보기술을 통해 리스크 평가방법을 책정하며,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과 협의하여 수입제품 등 법령에 위반하는 제품을 포함한 출하물의 정보 공유를 위해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협력한다.⁹³⁾ 이에 따라 안전기준 법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제품은 관세국경보호국에 의해 정식으로 유치된다.

3)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의무 강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의한 규제대상 제품⁹⁴⁾, 독성 함유물질의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적용

91) ジェトロ・ニューヨーク・センター, 米国の消費者保護法について, 平成22年度 海外輸入制度調査, 2010. 12, 6쪽.

92)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 ITDS)은 1995년 국제 무역 데이터의 시스템 일원화를 목표로 해 도입된 정부 주도 프로그램으로서, 현재는 CBP에 의한 상업 화물 처리 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ACE)이라는 관청간의 시스템 제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다. ジェトロ・ニューヨーク・センター, 米国の消費者保護法について, 平成22年度 海外輸入制度調査, 2010. 12, 11쪽.

93) ジェトロ・ニューヨーク・センター, 米国の消費者保護法について, 平成22年度 海外輸入制度調査, 2010. 12, 11쪽.

94) 규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제품 중 일부에 지나지 않고, 가전제

되는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사 제품이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규제대상으로 여겨진 제품 및 지금까지 자율적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았던 제품에는 2008. 11. 12. 이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의한 안전 확인서(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이하 GCC)가 요구된다.

가. 보고 의무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은 제품이 안전 관련 법규나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을 경우, 또는 사상의 위험이 높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⁹⁵⁾ 또한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포함한 소송에 의해 화해한 안건 또는 판결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⁹⁶⁾ 법령상으로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만, 동법상의 ‘제조업자(manufacturer)’에는 소비자 제품을 수입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어 수입업자도 제품 안전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나. 리콜 제도⁹⁷⁾

법령 또는 안전기준이나 금지 규칙에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규정준수팀(Compliance)은 책임 기업 또는 개인에게 경고장을 발행한다. 여기에는 위반 법령 또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품, 가정용 일용품, 스포츠 용품 등은 비규제 제품에 속한다. 그러나, 비규제 제품에 속하는 경우에도 납 도료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 기반으로서 제재를 받는다.

95) 15 U.S.C. § 2064(b)

96) 15 U.S.C. § 2084

97) 리콜 관련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cpsc.gov/businfo/corrective.html>

경고장을 받은 기업 또는 개인은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리콜을 포함한 자주적 대책을 강구하게 되나,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품에 위법성이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위험성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또는 개인에게 강제적 리콜을 명할 수도 있다.⁹⁸⁾ 이러한 위원회의 리콜 요구에 기업이 조속히 응했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위험성 분석 테스트 등의 절차를 생략한 신속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을 적용하게 된다.

다. 민·형사상 책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⁹⁹⁾ 기업은 재판을 피하기 위해 통상 위원회와 법정 외에서 화해를 하기도 한다. CPSIA에 따르면 화해금 최고 한도액은 위반 1건에 대해 최고 10만 달러, 복수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고 1500만 달러로 종래보다 확대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알면서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회사의 임원이나 대리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벌금 또는 금고와 벌금이 병과되기도 한다.¹⁰⁰⁾

4) 위험성이 높은 유해제품 목록 작성

CPSIA 제223조는 위험성이 높은 유해 제품 리스트에 관한 조항을 CPSA에 삽입한 것으로, 15 USC 2064(j)에 Substantial Product Hazard

98) 그러나, 2009년과 2010년 10월까지의 강제적 리콜 건수는 보고되지 않았다.

99) 15 U.S.C. §2069

100) 15 U.S.C. §2070

List가 추가되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소비자 제품을 지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¹⁰¹⁾

i) 업계 단체 등에 의한 자주적 안전기준에서 지적되는 위험성이 분명한 것

ii) 자주적 안전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위험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위원회가 지극히 위험하다고 특정한 제품은 해당 제품이 준수해야 할 자주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위법으로 간주되며, 2010년 5월 17일에 발행한 관보를 통해서 위원회는 연방규칙 CFR 1120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유해제품 리스트’를 새롭게 정의하여 해당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유독물질규제법

(1) 개 요

유독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s Act, 이하 TSCA)¹⁰²⁾은 1976년에 제정되어 1977. 1. 1.부터 발효되었다. 동법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PCB), 석면, 라돈, 납 페인트를 포함한 특정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사용, 배포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EPA에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 (PCB, 석면, 라돈, 납 등을 포함)에 대한 보고, 기록 보관, 시험 요건, 그리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관한 제한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¹⁰³⁾ 단, 식품, 약물, 화장품, 살충제를 포함한 특

101) ジェトロ・ニューヨーク・センター, 米国の消費者保護法について, 平成22年度 海外輸入制度調査, 2010. 12, 12쪽.

102) 15 U.S.C. §2601 et seq. (1976)

103) <http://www.epa.gov/lawsregs/laws/tsca.html>

정 물질은 TSCA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2) 동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동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¹⁰⁴⁾

1) 제1장 : 유독물질의 규제(Control of Toxic Substances)

이 장은 급박한 위험의 관리,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검사, 유해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규제, 제조 및 가공 통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 제2장 : 석면위험에 대한 긴급 대응(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이 장은 석면위험에 대한 긴급대응법(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AHERA, P.L. 99-519)이 1986. 10. 22. 제정됨에 따라 추가되었다.

동 장의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의 석면 감소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으로서, AHERA는 학교에서 정기적인 석면검사 및 재검사와 필요한 대응 조치 등을 요하는 연방 규제의 공포를 요구하였다. 또한, EPA 공무원들에게 공공 및 개인 소유 건물에서 석면에 의한 인간 건강에의 위험 정도와 그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 수단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AHERA는 1990년에 학교에서의 석면위험경감 재수권법(Asbestos School Hazard Abatement Reauthorization Act: ASHARA, P.L. 101-637)에 의해 개정되었다. 동 개정법에 의하면 학교, 사업장 및 공공건물에서 석면 검사 및 경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인가 요건을 추가하였다.

104) <http://epa.gov/compliance/civil/tsca/tscaenfstatreq.html>

3) 제3장 : 실내공기 중 라돈 경감(Indoor Air Radon Abatement)

1988. 10. 라돈 경감법(Radon Reduction Act, P.L. 100-551)에 의해 라돈 규제를 위해 제3장이 증보되었다.

동 장은 주가 라돈 노출로 인한 건강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EPA는 라돈이 야기하는 건강상 위협에 대해 시민들에게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고, 정부 건물 및 학교에서 라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4) 제4장 : 납성분 페인트 노출(Lead Based Paint Exposure)

1992. 10. 납성분 페인트 노출 저감법(Lead-Based Paint Exposure Reduction Act, P.L. 102-550)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제4장은 납 오염에의 노출을 줄이고 그것에 의한 유해 영향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납성분에 대한 노출(exposure of children)이 주요한 관심사로서, 동법에는 노출에 관한 연구, 제품에 있어서 납 수준의 결정, 감독 및 경감을 위한 주의 프로그램 확립, 납을 경감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 및 인증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이전의 법령에 의하면, EPA가 유독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이었지만, 현행 TSCA에 의하면 대중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화학물질의 영향은 화학물질이 영리적 목적으로 제조되기 전에 미리 검토되어야 한다.

동법에 따르면 위험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수입 및 가공업자가 그 화학물질을 검사해야 하고, 이들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EPA로 하여금 위험물질에의 노출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의 상당히 새로운 사용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 공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4장으로서 납성분 페인트의 유독성이 어린이에게 가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독물질의 노출에 관한 연구, 제품에 있어서 납 수준의 결정, 감독 및 경감을 위한 주의 프로그램 확립, 납을 경감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 및 인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3)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규제법안

1) 개 요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규제법안(Kid-Safe Chemicals Act of 2008)¹⁰⁵⁾은 어린이, 근로자와 소비자들이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독물질규제법(TSCA)을 수정하는 법안이다. TSCA는 제정된지 30여년이 넘었으나 그동안 실질적 개정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¹⁰⁶⁾ 어린이용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어린이 안전 보호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상원의원인 Lautenberg, Boxer, Clinton, Kerry, Menendez와 백악관이 2008년과 2010년 두차례 입법을 추진했으나, 2번의 시도가 모두 무산되어서 법률이 되지 못했다.¹⁰⁷⁾

동법안은 TSCA를 넘어서는 것으로 화학물질 제조업자 및 가공업체에게 화학물질이 유아, 어린이 및 근로자에게 안전한 것임을 입증할 부담을 지우고, EPA에게는 안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요청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사용하

105) <http://www.ewg.org/files/EWG-Kid-Safe-legislativefactsheet.pdf>

106) 2006년도 GAO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의 결여의 원인으로서는 현행 TSCA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의회가 TSCA를 통과시켰던 30여년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5가지의 화학물질만이 EPA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학물질의 등장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lautenberg.senate.gov/newsroom/record.cfm?id=298072>

107) 2008년에 동법의 제정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2010. 상원의원인 Lautenberg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역시 무산되었다. 새로운 법안은 EPA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권한을 더 확대한 것이다.

는 것을 제한, 금지하기 위한 기한을 설정하였다.

2) 주요 내용

동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⁸⁾

가. 산업의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데이터 요구

(Require Basic Data on Industrial Chemicals)

화학물질 생산 및 가공 업체들은 신뢰할만한 증거에 의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고, 최소한의 데이터가 결여된 화학물질은 미국 내에서의 제조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미국내로 수입도 불가능함이 규정되어 있다.(제505조)

나. 기업에 안전성 입증 책임 부과

(Place the Burden on Industry to Demonstrate Safety)

EPA는 기업이 동법을 도입한지 15년 내에 모든 산업적 화학물질의 입증 책임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제503조)

다. 신생아에게 위험한 화학물질의 사용 제한

(Restrict the Use of Dangerous Chemicals Found in Newborn Babies)

인간의 코드 블러드에 탐지된 위험한 화학물질은 즉시 사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제504조)

라. 건강 보호를 위한 새로운 과학적 입증방법 사용

(Use New Scientific Evidence to Protect Health)

EPA는 낮은 투여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태아 또는 영아인 동안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나노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과학 및 새로운 검사 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추가적 검사를 고려하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제503조)

108) <http://lautenberg.senate.gov/newsroom/record.cfm?id=298072>

마. 인간의 노출을 평가할 국가 프로그램의 설립
(Establish National Program to Assess Human Exposure)

연방의 질병통제방지센터는 어린이, 근로자 및 다른 보호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오염원의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제505조)

바. 유독 화학물질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
(Expand the Public Right to Know on Toxic Chemicals)

화학물질의 위험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새롭고도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는 기업, 공동체 및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EPA는 비밀보장에 관한 과도한 기업의 주장을 거절할 수 있다.(제511-512조).

사. 장기적 해결책에의 투자(Invest in Long-Term Solutions)

화학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대안 및 기술적 원조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다.(제508조)

5. 워싱턴 주의 어린이 안전제품법

(1) 개요

2007년 여름에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 때문에 수백만개의 장난감 리콜 사태 발생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용 장난감에 포함된 납성분은 출산, 장애 유발, 호르몬 및 암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유해 화학물질임이 입증되었다. 연방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 주는 2008년 어린이 안전 제품법(Washington's Children's Safe Products Act of 2008)¹⁰⁹⁾을 통과시킴으로써 유독 화학물질로부터

109)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deq.state.or.us/about/eqc/agendas/>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워싱턴 주의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의 유독물질 위험 완화 발안(Ecology's Reducing Toxic Threats Initiative)을 통해 유독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것이 사람들과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하고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¹¹⁰⁾ 어린이 안전제품법은 이러한 발안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동법은 두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워싱턴 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에 허용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연방 의회가 2008년 8월에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을 통과시킨 것보다 실질적으로 앞서는 것이었다.¹¹¹⁾

동법의 두 번째 부분은 생태부로 하여금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협의하여 제조업자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목록은 어린이에게 고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의 보고 목록이라 불린다. 법률에 의해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목록상의 화학물질은 유독하고 어린이 제품에서 발견되었거나 인체 조직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 단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주요 내용

1)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등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2009. 7. 1.부터 90ppm 이상의 납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어린이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었다.¹¹²⁾ 납성분에 대한 40ppm 제한은 전미 소아과

attachments/2008apr/G-AttachB.pdf

110) <http://www.ecy.wa.gov/programs/swfa/cspa/>

111) <http://www.ecy.wa.gov/programs/swfa/cspa/>

112) 2010년 7월 1일부터는 40ppm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협회가 권고하는 사항이며, 현행 연방의 기준인 600ppm보다 훨씬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9. 7. 1.부터 40ppm 이상의 카드뮴을 포함한 어린이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었고, 2009. 7. 1.부터 100ppm 이상의 6종의 특정 프탈레이트 합성물을 포함한 어린이용 제품의 판매가 역시 금지되었다. 이러한 6종의 프탈레이트는 1999.부터 유럽 연합에서도 어린이용 제품에서 금지되어 왔던 것이다.

동법안이 적용되는 어린이용 제품에는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화장품, 보석이 포함되고, 어린이가 양치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는데 필요한 제품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제한된 제품을 판매한 소매업자는 면책된다.

2) 어린이 안전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업자들은 제품이 ‘어린이에게 고도로 위험스러운 화학물질(chemical of high concern to children)’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생태부는 화학물질에 좀 더 안전한 대안 정보에 관해 웹사이트에 제조업자의 정보를 게재할 의무가 있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부모 및 어린이 양육자 및 보건 전문가에게 영아 및 어린이 제품의 유독 화학물질에 관해 교육할 의무가 있다.

3) 어린이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추적 의무 부과

동법에 따르면 생태부는 어린이에게 고도로 위험한 화학물질과 그러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어린이용 제품 또는 제품 분류군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신체, 가정 식수 및 소비자 제품에 존재하는 발달 독성(developmental toxicity), 암, 출산의 위험, 호르몬

장애 등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생태부는 제품의 화학물질을 가장 잘 규제할 수 있는 정책적 권고사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발견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2 절 일 본

1. 개 관

(1) 규제개혁과 인증제도

일본은 1995년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맞춰 각종 인증제도(기준·규격 및 검사·검정제도를 총칭하는 것)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전반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준인증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첫째, 정부가 기준인증, 검사검증 업무 일체를 독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둘째, 사업자 본인이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자기확인·자주보안을 기본취지로 하여 민간검사기관에 의한 제3자 검사제로의 이행, 기준의 국제정합화·성능규격화, 외국 데이터의 수입과 국제적인 상호승인 및 중복검사 배제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업무담당기관에 관하여는 업계단체, 공익법인 등 민간을 활용할 것과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행정사무위탁형의 공익법인을 이용한 지정검사기관 지정법인제도 등의 사회적 문제점 등도 함께 개혁하고자 하는 배경도 존재하였다.¹¹³⁾

제품안전인증제도의 경우도 이러한 정책의 기초 하에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는데, 일본 통산성은 11개의 관련법을 일괄해서 개정하는 「통산산업성 관련의 기준·인증제도등의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하는

113) 정용수·강병모,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8), pp.114-115.

법률」을 1999년에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생활용품안전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 「가스사업법」이 2000년 10월부터, 「전기용품단속법」(개정후는 전기용품안전법)은 2001년 4월부터 개정 시행되었다.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의 경우, 그 주요 개정내용은 ① 정부인증의 폐지와 자기확인화 ② 민간의 제3기관에 의한 적합성 검사제도의 도입, ③ 사후조치의 충실 등에 의해, 정부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특정제품에 자기확인 의무를 부여한 것이었다. 다만, 특정제품중에서도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특별특정제품」으로 지정하여, 제3자에 의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¹¹⁴⁾

(2) 제품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규제제도

위와 같이 1990년대 말의 일본정부에 의한 규제개혁에 의하여 2000년 개정당시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 해당되는 특정제품의 품목수도 6개에서 4개로 축소되는 등(야구용 헬멧, 롤러스케이트) 자기검사에 의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제품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제품에 의한 사고발생을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 5월부터 중대한 제품사고발생의 보고와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장기간동안 사용한 노후된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8월부터 장기사용제품안전점검·표시제도가 창설되었다.

114) 구본경, 『일본, 소비생활용품 안전법 개정』, KOTRA (2000).

<어린이 제품 안전관련 규제 및 정책수단>

	법률·조치	규제개요	주무관청 및 기관
법적 규제	소비생활용품 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안전성에 관한 일반적 요건 • 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중대한 사고 보고의무(제35조) •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제39조, 82조) 	경제무역 산업성
	위해물질함유 가정 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함유가정용품의 리콜(제6조) 	보건노동복 지성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난감에 대해 특정 화학물질에 관한 요구사항 수립(제62조) • 수입업자는 최초 선적 단계에 수입장난감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일본 검역사무소 (Japan Quarantine Office)’ 에 제출해야 함 	보건노동 복지성
산업계의 자발적 조치	장난감 안전성 기 준(ST Mark 프로 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적·물리적 특성”, “가연성”, “화학적 특성” 에 대한 안전 규제 확립 • 제3자 시험에 의해 장난감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을 받은 경우, 장난감 포장에 ST Mark 허가 	일본 장난감 연합(JTA, Japan Toy Association)

2.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

(1)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기준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은 소비생활용 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보수제품의 적절한 보수를 촉진하고, 아울러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¹¹⁵⁾ 따라서 어린이제품과 관련하여, 특히 어린이제품에 의한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어린이제품의 안전역시 이 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보호되어진다.

(2) 신고사업자의 기준적합의무

이 법은 신고사업자의 기준적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11조 내지 13조), 소비자에 미치게 될 위해발생우려의 정도와 품질확보의 신뢰성 정도에 따라서 특정제품과 특별특정제품으로 구분하여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제품안전인증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1) 특정제품

특정제품이란 소비생활용 제품 중 구조, 재질,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특히 위해를 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하는데,¹¹⁶⁾ 정령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으로는 등

115)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1973년 6월 6일 법률 제31호 제정,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최종개정) 제1조.

116)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 제2조 제2호.

산용 로프,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승차용 헬멧(이륜차 및 원동기 부착자전거용에 한함), 휴대용레이저 응용장치, 욕조용 온수순환기, 석유 급탕기, 석유목욕조, 석유스토브, 가정용 라이터의 10개 품목이다.¹¹⁷⁾

또한 이 법은 사업자 등에게 자기인증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정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정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으며,¹¹⁸⁾ 주무대신은 특정제품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일반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¹¹⁹⁾ 또한 제조자 또는 사업자가 당해특정제품에 대하여 기준준수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¹²⁰⁾

2) 특별특정제품

특별특정제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는 자 가운데,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특정제품으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¹²¹⁾ 정령에 의해 유아용 침대,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 욕조용 온수순환기, 가정용라이터 등 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¹²²⁾

117) 「소비생활용품안전법」(1974년 3월 5일 정령 제48호 제정, 2010년 11월 10일 정령 제223호 최종개정) 별표1 및 별표2.

118)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제11조 제1항(기준 적합의무 등)

119) 주무대신은 특정제품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해당 특정제품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격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해당 규격 또는 기준에 상당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미리 내각총리대신에 협의해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같다(소비자생활용품안전법」 제3조(기준)).

120)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제11조.

121)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제2조 제3호.

122) 「소비생활용품안전법」 별표 2.

특별특정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제3자 인증)를 받고, 인증서를 교부받아 보존하여야 한다.¹²³⁾ 즉, 제3자 인증을 하여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제35조)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당해 제품으로 인해 중대한 제품사고가 생긴 것을 안 경우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과 사고의 내용(구체적으로는 해당소비생활용 제품의 명칭 및 형식, 사고의 내용 및 해당소비생활용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수량 및 판매한 수량)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¹²⁴⁾ 이 때 중대한 제품사고라 함은 제품사고 가운데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가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에 해당하는 위해의 내용 또는 사고의 모양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¹²⁵⁾ 1)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사망 또는 치료기간이 30일 이상이 걸리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와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의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이다.¹²⁶⁾ 내각총리대신은 이와 같은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해당 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주무대신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정보가 보고되면 주무대신은 중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품의 명칭 및 형식, 사고의 내용 등을 신속히 공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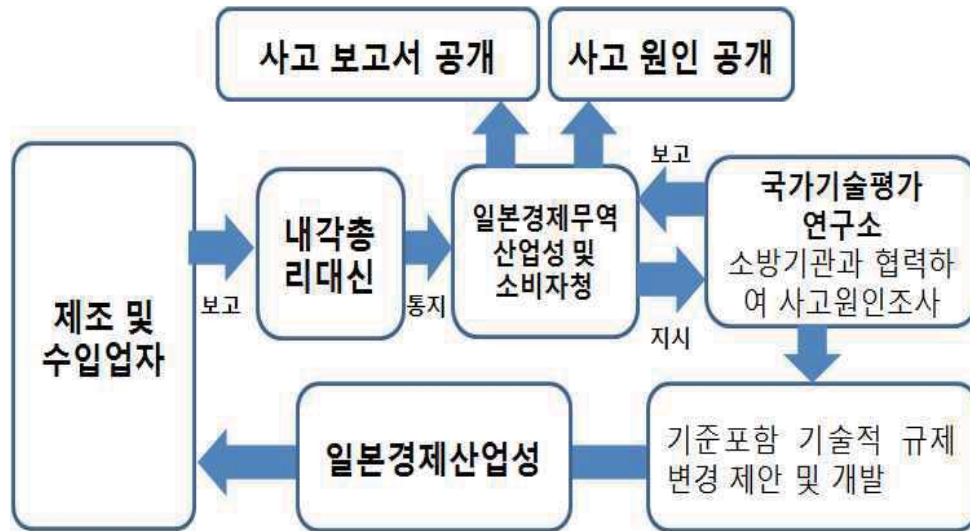
123)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제12조

124)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제35조

125)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제2조 제6항

126) 「소비생활용품안전법시행령」(1974년 3월 5일 정령 제48호 제정, 2010년 11월 10일 정령 제223호 최종개정) 제5조

<사고의 보고체계>

(4) 하자있는 상품에 대한 리콜¹²⁷⁾

주무대신은 소비생활용품의 결함에 의해 중대한 제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외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소비생활용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127) 주무대신은 소비생활용품의 결함에 의해 중대한 제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외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32조의 규정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해 그 제조 또는 수입과 관련되는 해당 소비생활용 제품의 회수를 하는 것 이외에 해당 소비 생활용 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로는, 「식품위생법」 제54조, 「가스사업법」 제39조의 18, 「전기용품안전법」 제42조의 5,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보정화에 관한 법률」 제65조,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이에 해당한다(「소비생활용품안전법시행령」 제39조(위해방지명령))

의 중대한 위해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3.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에 대하여 보건위생상의 견지로부터 필요한 규제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¹²⁸⁾ 이 때, “가정용품”이란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은 제외)을 말하며, “유해물질”이란 가정용품에 함유되는 물질 가운데 수은 화합물 및 그 외에 사람의 건강에 관계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¹²⁹⁾

소비생활용품안전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에 의하여도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¹³⁰⁾ i) 보건위생상 또는 독극물에 관하여 기준이 정

128)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1973년 6월 6일 법률 제31호 제정,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최종개정) 제1조.

129)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30)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이 정해진 가정용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가정용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수여(授与)한 것에 의해 사람의 건강에 관계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람에게 대해 해당 가정용품의 회수를 하거나 해당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가정용품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대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해당 피해의 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가정용품에 해당 피해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가정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사업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해당 가정용품의 회수를 하거나 해당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회수명령 등)).

해진 가정용품의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가정용품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과 관계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ii) 당해 제품에 의해 사람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대한 피해가 생겼으며, 해당 피해의 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가정용품에 당해 피해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후생노동성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리콜조치(제품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¹³¹⁾

4.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필요한 규제 및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음식에서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³²⁾ 이 법에서 말하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과정에 대해 또는 식품의 가공 혹은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그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¹³³⁾ 이 법은 주로 식품 및 첨가물과, 용기 및 용기포장상의 안전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중 다수의 규정들이 제62조에 의하여 ‘유아가 접촉하는 것으로서 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장난감 등’에 대하여 준용한다.¹³⁴⁾

131)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가정용품의 기준)

132) 「식품위생법」(1947년 12월 24일 법률 제233호 제정,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최종개정) 제1조

133) 「식품위생법」 제4조

134) 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규격을 정함),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제3장 용기 및 용기포장과 제4장 표시 및 광고), 제25조로부터 제56조까지(제7장 검사, 제8장 등록검사기관 및 제9장 영업) 및 제58조로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유아가 접촉하는 것으로서 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후생노동

식품위생법에서 적용되어지는 ‘장난감 등’은 다음과 같다.¹³⁵⁾

1. 유아가 입에 접촉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장난감
2. 액세서리완구(유아가 액세서리로서 이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판박이그림, 오뎅이(起き上がり), 마스크(おめん), 색종이, 딸랑이, 지능개발용완구(입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한하며 이 조항(호)에 열거된 것은 제외한다.), 집짓기놀이, 장난감전화, 장난감동물, 인형, 찰흙, 타는 완구류, 블럭장난감, 풍선, 공, 소꿉놀이 완구
3. 전호의 장난감 등과 조합하여 노는 장난감 등



식품위생법에 정하는 기준이나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위의 장난감 제품은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어진다.

5. 장난감안전기준(ST마크 인증제도)

ST마크는 일본완구협회가 제정한 「장난감안전기준」에 합격한 완구에 부여되는 마크이다. 14세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에 표

대신이 지정하는 장난감 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10조 중에서 「첨가물(천연 향료 및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 음식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첨가물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감이나 그 첨가물로서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적 합성품(화학적 수단에 의해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 이외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얻을 수 있었던 물질을 말한다.)」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6조 및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계로서 야채 혹은 과일 또는 식기의 세정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5조로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 제1항, 제28조로부터 제30조까지, 제51조 및 제54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은, 영업 이외의 경우로서, 학교, 병원 그 외의 시설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식품을 공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식품위생법」 제62조).

135)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48년 7월 13일 후생성령 제23호 제정, 2011년 7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89호 최종개정) 제78조

시되고 있는데, 스포츠용품이나 수중용품, 유모차 등은 ST마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항목은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가연성·화학적 특성 등으로,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식품위생법 외, EN71 등도 검사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다. 장난감안전기준과 그 표시제도는 제3자기관에 의한 인증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정된 시험기구에 의한 안전장난감기준 적합성 시험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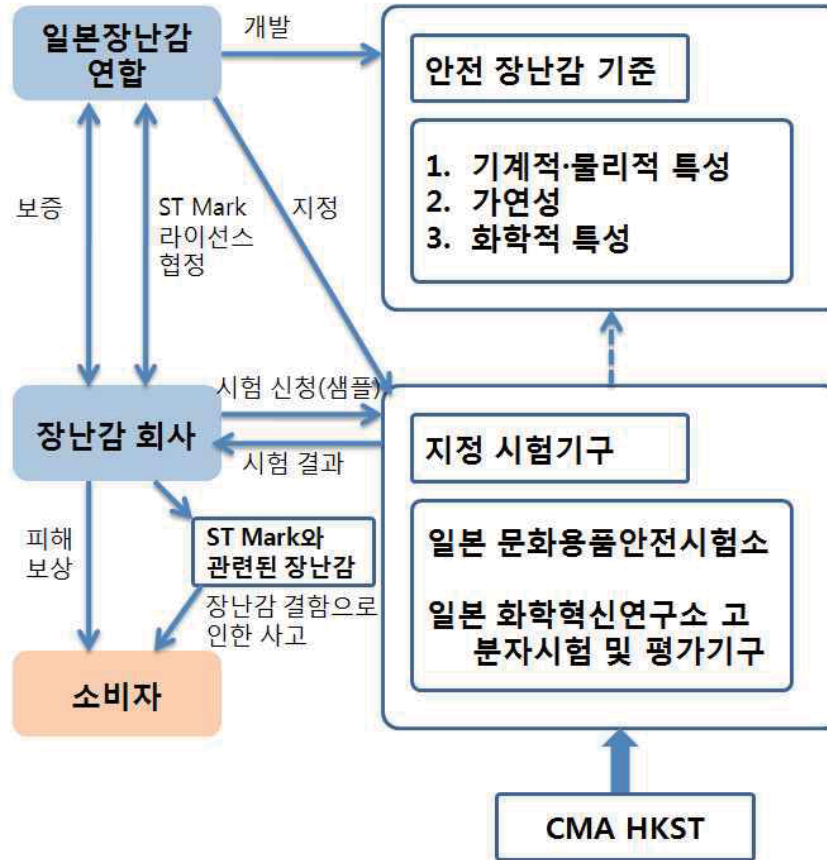
<일본원구협회의 장난감안전기준>

	예방되어야하는 위험요소	요 건
Part 1 기계적·물리적 특성 (재료, 내구력, 기능, 구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섭취(소형 부품, 구강용 완구, 팽창 물질) • 질식(입안에 꼭 맞는 장난감 혹은 구성품, 유연한 천, 좁은 공간, 작은 가방, 헬멧) • 교살(코드), 자상(날카로운 모서리, 유리, 고정기) • 자창(날카로운 부분, 철사) • 찰과상(경첩, 접는기계, 운전기계, 온천) • 기타 : 청력손상, 안구손상, 익사 텀블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부품은 “소형부품실린더”에 들어맞지 않아야 함 - 통관 검사는 어린이의 입안에 꼭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원형 시험용 측정기"와 "원형 시험용 측정기"를 사용 - “날카로운 부분”에 대한 시험 등

	예방되어야하는 위험요소	요 건
Part 2 가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룰로이드 사용 금지 - 변장용 복장, 텐트 등의 연소율 제한 - 연질물질로 이루어진 장난감 등의 연소율 제한
Part 3 화학적 특성 (물질, 페인트 코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가능 도색물질 -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등을 함유하는 물질 - 폴리염화비닐에 포함된 프탈레이트 합성물질 - 전사인쇄지, 종이접기용지, 고무로 만들어진 장난감 등에 포함된 물질 - 염화비닐수지 코팅에 포함된 물질 - 페인트코팅(8종 중금속) - 장난감에 사용되는 금속(장난감 부속용품 포함) - 섬유제품(포름알데히드) - 비누방울용액, 잉크 유사품 - 공갈젓꼭지 및 치발기 등

장난감안전성인증업체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장난감안전성표시가 부착된 관련 장난감이 안전장난감기준(ST Standard)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만일 ST마크가 부착된 완구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최대로 대인 1명 1억 엔, 대물 2천만 엔, 위로금 30만 엔의 공제금을 제조업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¹³⁶⁾

< ST마크 인증제도 체계 >



136) 全基準と規格について, <http://allabout.co.jp/gm/gc/312648/>

제 4 장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 체계의 정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기본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의 안전관련법을 운영하고 있다. 즉,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에서는 종전과 달리 소비자안전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안전에 관한 입법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안전 법규 외에 제품안전기본법을 2010년 2월에 제정하여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 등 많은 법규가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법규가 산재하여 있고, 입법체계나 그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행정시책법의 형태로 산업별 또는 품목별로 특별법 형태로 계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품 안전에 관한 법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전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사실상 부존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안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린이안전 전반이 아닌 일부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또한 개별 제품안전법 역시 일부에서 어린이안전을 규율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전반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서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 우선 장기적 방안으로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의 검토이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안전에 관한 전담부처를 신설하거나 지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현행 법제의 틀 속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에 대하여 일반원칙이나 이념적 조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법률(예컨대 (가칭)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별법에는 법의 목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① 법률의 목적, 용어의 정의(어린이, 어린이 안전, 안전사고, 등),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우선 적용 규정), ③ 안전사고 보고제도(결함정보, 중대사고정보 등), ④ 신속한 리콜조치(사고확대방지 조치), ⑤ 어린이 제품안전 정보센터 (사고정보 수집, 어린이 제품안전 연구, 제품안전정보 제공 등), ⑥ 신속·공정한 피해구제(손해배상, 입증책임, 배상능력 확보 의무화 등)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다음으로 단기적 차원에서는 안전영역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본법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공산품 등 제품에 관하여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확보라는 장을 신설하여 이의 내용을 보완하고, 식품에 관하여는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2.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평가체계의 개선

(1)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체계의 개선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주의가 가장 필요하지만, 안전성을 결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

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어린이와 같은 안전취약계층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더욱더 강조된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시작된다. 즉,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는 국가의 안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안전에 관한 기본방향인 안전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품안전법제에서는 안전정책의 수립과 세부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안전정책은 통일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닌 각 부처별 또는 각 사안별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립된 안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미지수이다. 즉, 소비자기본계획의 수립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정책의 수립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식생활안전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를 통일하여 하나의 기구에서 총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 역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일의 기구에서 이를 총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독립하여 제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또한 현행법상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은 모든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안전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

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역으로 수 많은 안전정책을 과연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립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다가 끝이 나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안전정책은 단지 정책으로만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전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이의 해결방안은 안전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기본골격의 수립과 세부 시책의 수립으로 구분하고, 기본적인 틀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직속의 국가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각 부처의 안전에 관한 정책사항은 해당 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는 것 역시 고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법에서 안전정책의 수립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어린이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 역시 안전정책의 내용 중 하나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제품안전정책의 시행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제품안전정책은 그 수립도 중요하지만, 수립한 정책의 수행평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수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립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효과분석 및 다음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기본계획평가 이외에 다른 법상 안전정책에 대한 평가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올바른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정책시행평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제품안전확보에 있어서 입법적 미비라고 할 것이다. 물론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정책의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어느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못지 않게 평가 역시 중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정책의 평가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¹³⁷⁾

3. 어린이 제품안전행정종합기구의 설치 검토

제품안전에 관한 법은 매우 다양하며, 이의 소관 부처 역시 단일의 부처가 아닌 복수의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수의 부처가 각각 안전행정을 담당하는 현행 체제는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제품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품안전사고의 예방 및 확대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는 비체계적이며, 비효율적이다. 즉,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안전행정을 담당한 결과 해당 부처의 영역에 한정하여 안전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다른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관업무를 처리하였기에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는 별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안전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1) 우선 단일의 부처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행정을 전담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검토이다.

생활안전은 국민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활안전은 사후에 보상도 중요하지만 행정에 의한 예방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어서 행정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는 각 품별별 산업별로 위해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137) 고희석,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저스티스」 제120호, 2010.12, 27-29쪽.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국내의 전지역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가 많으므로 위해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적절한 행정을 통괄하며, 필요하면 사법적 해결도 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구의 설치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특정 산업에 예속되는 개별적인 제품안전행정청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의 결함정보보고제도, 리콜제도, 위해정보관리제도 등 안전과 관련한 수많은 제도가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산업중시의 시책을 추진하는 행정청에 그 기능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 역시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¹³⁸⁾

2) 다음으로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현행의 행정체제하에서 안전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의 검토이다. 단일의 부처가 전담하기 보다는 제품을 유형화하여 안전행정 전담부처를 지정하고, 관련 부처들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안전행정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4. 제품안전정보의 보고, 수집 및 처리의 개선

제품안전확보의 첫 번째는 안전관련 정보의 수집이다. 이러한 제품안전정보는 단지 안전사고관련 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위해물질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안전정보뿐만 아니라 국외 안전정보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 안전정보의 수집체계는 적정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정보의 수집기관으로 소비자안전센터, 식품안전정보센터 등이 존재하며, 각 해당 법령에서는 안전사고의 발생시 사업자는 각 행정부처에 보고하여야 한

138) 고희석,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2011·2, 30쪽.

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행정기관 또는 정보센터 등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즉, 제품안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그다지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제품안전정보는 단지 당해 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안전사고의 예방 및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품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정보이다. 따라서 제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근본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여야 하며, 제품안전정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집 및 처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품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제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이며,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 국민들의 제품안전사고의 예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절차 및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는 제품별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단일의 통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¹³⁹⁾

5. 시험검사기관의 확충 및 정보수집기관과의 연계

상기와 같이 제품안전사고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고위해정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안전센터를

139) 약사법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유해사례로서 질병·장애·사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유해사례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장애·사망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68조의8). 그러나 이의 정보의 공개 또는 일반 국민에게의 제공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입법적 미비라고 할 것이다.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이의 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성을 분석하여 위해성 여부를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시정조치를 발하기 위하여는 제품의 위해성을 시험 및 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전문시험검사기관을 설치한다고 하여 이 기관에서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민간 및 국공립 시험검사기관과의 연계 역시 필요하지만, 독립된 전문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민간 기관 등의 협조만을 요청하는 것은 안전확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 시험검사기관과의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문 시험·검사기관을 설치하였을 경우 제품안전사고 정보의 수집체계 및 행정부처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즉, 위해성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결과를 공표하거나 행정부처가 시정조치 등을 발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 상호간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6. 행정기관의 권한행사

(1) 자유재량 또는 기속재량

어린이제품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확대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사적(私的) 절차에 의한 사업자의 위해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행정기관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통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록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안전법에서는 행정기관에 시정조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품안전관련 법상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대부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기속적 재량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중적 판단여지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속적 재량행위의 해석만으로 과연 행정기관의 시정권한의 행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¹⁴⁰⁾ 따라서 행정기관의 시

140) (1) **소비자기본법** 제49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0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3)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개선·수거·파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정권고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재량행위로 규정하더라도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기속행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¹⁴¹⁾

(2)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요건

행정기관의 시정권한에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의 요건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즉, 양자의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한 결과 행정기관의 자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한 사업자에게는 시정권고가, 다른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하여는 양자의 요건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¹⁴²⁾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41)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72조 (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42) 고희석,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8, 178쪽.

제 5 장 결 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법제에서도 많은 제품안전법제가 존재하지만, 정작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 법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제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단일의 특별법(예컨대 (가칭)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현행체제하에서 각각의 안전기본법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에 의한 어린이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안전은 안정정책의 수립에서 시작된다. 물론 다양한 법에서 안전정책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복수의 부처가 각자 독립적으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할 결과 과연 실효성있는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직속으로 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총괄적인 안전정책은 동 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이의 세부시책에 대하여 각 행정부처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수립된 정책에 대한 시행평가는 정책의 효과 및 후속 안전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필수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전행정에 관하여 복수의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의 체계화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의 확보에 있어서 중요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제품안전행정종합기구의 설치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제품을 유형화하여 구분하여 각 유형별 주된 행정부처를 설정하고, 다른 부처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전예방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정보의 수집체계 역시 소관부처가 수집하되, 국민에게 전달은 단일의 통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기관에서 수집한 위해정보는 상기의 정보처리기관에 보고되어 일반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안전행정은 매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권행행사에 있어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요건이 동일하여 행정기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권한행사에 대하여 기속행위로 전환하고,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갑수, “최근 일본의 제품안전관리 동향”, 「기술표준」 통권 제88호 (2009년 5월), 기술표준원, 29-33쪽
- 강창경,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법체계의 재구성, 「경제법연구」 제5권 제1호 (2006년 6월), 23-40쪽
- 고형석,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8, 55-92쪽
- _____,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2011 · 2.
- _____,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저스티스」 제120호, 2010 · 12.
- 김만영, “어린이용품과 유해화학물질”, 「환경과 어린이 건강 토론회」 주제발표문, 국민건강복지포럼, 2008, 25-40쪽
- 김성천·차현숙, 리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 김수진(2005),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보건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중권, (판례평석) "미니컵 젤리로 인한窒息死와 國家賠償責任의 問題-대상판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인권과정의」 Vol. 419, 2011년 8월, 100-131
- 김혜진, 완구 위해사례 분석 조사, 한국소비자원, 2010.12,
- 문정숙·이의선(2006), “공산품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연구 - 국내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경제경영논집」 제36집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65-99쪽

참고 문헌

- 박항주,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 실외 놀이터를 중심으로 -”, 「환경과 어린이 건강 토론회」 주제발표문, 국민건강복지포럼, 2008, 49-58쪽
- 배진한, “최근 미국의 제품안전정책 동향”, 「기술표준」통권 제90호 (2009년 7월), 기술표준원, 27-28쪽
- 송재빈, “표준과 제품안전”, 「소비자」 통권320호(2010년 7/8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2-27쪽
- 오경임,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안전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2011.6
- _____, 아동용 잠옷 방염성 안전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2010.12
- 이상석(200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규의 개선방향”, 「조경연구」 37권 2호(2009.6), 한국조경학회, 47-61쪽
- 이종영,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제도”,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2010년 8월), 비교공법학회, 2010, 309-346쪽
- 이해각, 어린이 자석 삼킴 예방사고를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안), 한국소비자원, 2011.3
- 이현자, “어린이보호포장제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기술표준」통권 제 88호(2009년 5월), 기술표준원, 25-27쪽
- 윤선화,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 시설안전과 제품안전”, 「소비자」 통권288호(2007년 5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5-39쪽
- 이의선·문정숙, “공산품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연구 :국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경제경영논집」 제36집 제2호(2006년),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65-99쪽

- 장재연, “환경과 어린이건강 : 환경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환경과 어린이 건강 토론회」 주제발표문, 국민건강복지포럼, 2008, 9-22쪽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연구센터(2007),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개발
- 허경욱, 생활속의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관리정책의 방향, 「한국생활과학회지」제19권 제2호(2010년 4월), 2010, 311-323쪽
- _____, 수입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안전 확보 방안, 「소비문화연구」 제12권제2호(2009년 6월), 한국소비문화학회, 1-18쪽.
- 홍명수(2009),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로서 법령준수의 의의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 「명지법학」 제8호, 105-117쪽.
- 김용오·황인택·박진오·유찬주·홍영전, “완구 안전표준 선진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제58집(2008년), 기술표준원, 372-381쪽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영유아용품 안전 실태조사 : 블라인드 류와 유아용 실내그네 안전 확보 방안 마련, 2011.6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어린이용 로션 및 크림제품의 안전실태, 201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영유아 의류 안전실태 조사 어린이 삼킴사고 위해사례 분석 및 영유아 섬유제품 안전실태 조사, 2010
- 환경부,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 관리 매뉴얼, 2010
- ジェトロ・ニューヨーク・センター, 米国の消費者保護法について, 平成22年度 海外輸入制度調査, 2010. 12

참 고 문 헌

<http://www.cpsc.gov/about/cpsia/childproducts.html>

<http://www.cpsc.gov/businfo/frnotices/fr11/childprod.pdf> 참조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sdt=&boardBean.edt=&boardBean.searchColumn=title&boardBean.searchValue=&menuNaviId=520&boardBean.menuid=520&boardBean.brdid>